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장흥군 정기종합감사 -

2021. 9.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장흥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장흥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6월부터 '21년 3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4. 27.부터 5. 6.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44	15 (30명)	1 (1명)	14 (29명)	25	16 (538)	11 (538)	4 (253)	2 (128)	1 (31)	4 (126)	5	2	4	2	1	2	2

2. 주요 지적사항

①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지역경제과)은 '19. 11월부터 '21. 3월까지 정남진장홍사랑상품권을 발행(600억원) 및 판매(392억원)하고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등에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소위 “상품권 깡”)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지자체장은 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면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에 보고·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검사가 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경제과)은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3곳과 사용자 25명(중복 포함)이 거래한 1,850만원에 대해 의심 가맹점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상품권 깡’ 등에 대한 처벌 조치가 미이행

☞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

② 징계 및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부적정

- 위 군(총무과)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6급 이하 직원 경징계 요구에 대하여 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추진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등에 징계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징계처분 전에 직근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에 실제로 재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재심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18. 6월부터 '20년까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로부터 9건의 경징계 요구를 받아 징계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 장흥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동시에 행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부당 업무 추진
- 그로 인하여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18. 00. 00.에 '○○○○ 위반' 사건을, '20. 00. 00.에 '○○○○' 사건을 인사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했는데도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결과 초래

2. 6급 팀장 직렬 불부합 인사

- 위 군(총무과)은 '18. 6월부터 '21. 1월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추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는 6급 팀장급에 대한 직급이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1. 5. 6. 감사일 현재 6급 팀장급 총 154개 직위 중 25개 직위(16.2%)에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을 부여

- 또한 팀장 직위에 임용가능한 지방○○6급은 최대 11명인데도 3명이 초과된 14명을, 지방○○6급은 최대 6명인데도 2명이 초과된 8명을, 지방○○○○6급과 지방○○○○6급은 팀장 직위에 임용이 불가능하나 각 1명씩을 6급 팀장 직위에 부당하게 임용
- 그로 인하여 조직원의 전문성 저하에 따른 능률 저하 우려 및 보직에 대한 예측과 안정성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3. 6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과다 산정

- 위 군(총무과)은 '18. 9월부터 '20.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53명을 승진임용
-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지자체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직급승진을 하지 않은 5급 승진후보자를 6급 승진요인으로 포함하여 '20. 6. 26. 정당한 승진요인 15명보다 1명을, '20. 12. 30. 정당한 승진요인 9명보다 4명을 6급으로 부당 승진
- 그로 인하여 나머지 7급 직원들이 정당하게 다음 6급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박탈 및 5급 승진후보자가 실제 승진임용되기 전까지 최대 약 2개월가량 6급 과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앞으로 법령에 따라 징계업무를 추진하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규정한 직위별 직급을 준수하며, 승진 심사 시 정당한 결원을 산정하여 승진 임용을 하도록 “기관경고”

③ 산림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산림휴양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국비(61억 8천만원)을 교부받아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
 - 「산림자원법」 제10조 등에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제수 조림은 사업 정산 완료 후 산주 자부담금 집행 잔액을 산주에게 환급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휴양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경제수 조림사업의 정산 결과 산주 자부담금의 잔액(3개 사업, 2,378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산주에게 환급하지 않아 82명에게 2,378만원의 금전적 손해 초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조림지 등 풀베기 사업의 작업은 5월~7월에 실시하고 추가로 실시할 경우는 8월~9월 초순에 실시하되, 9월 초순 이후는 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휴양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조림지 풀베기사업 134건(230.17ha)을 권장시기가 아닌 9월에서 10월 초순에 전부 추진하여 권장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 실행으로 사업효과 저해
 - 「산림자원법」 제36조 등에 입목벌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임산물 운반에 사용된 운반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확인·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휴양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복구대상 운반로 172개소(62.22km)에 대해 적정 복구여부를 미확인 및 미점검
 - 그로 인하여 '20. 8월 경 장마·집중호우에 취약한 운반로에 땅 밀림 현상 발생(○○면 ○○리 산00 등 4개소)

☞ 조림사업 등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2명(팀장,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잔액 2,378만원을 산주에게 환급하도록 “시정요구”

④ 유가보조금 및 과태료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재난안전과)은 '18년부터 '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점검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여객운송종사자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면 유가보조금을 환수, 지급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취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난안전과)은 '18년부터 '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113건(2,239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등에 책임보험 등에 미가입한 자는 300만원 이하,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난안전과)은 '18년부터 '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책임보험 등에 미가입 한 328대의 차량소유자에게 6,597만원 과태료 미부과
 - 또한 '18년부터 '20년까지 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54건 중 23건에 대하여 298만원 과태료 미부과
- 그 결과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목적인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훈계요구”
☞ 부정수급 의심내역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미부과한 6,89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⑤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재무과)은 관광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 체결로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지자체의 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물건 신축 시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환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매입세액 8,938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8,938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토록 “시정요구”

⑥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등에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용건축물 취득세 63건 2,610만원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8건 332만원을 미부과
-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등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
 - *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주)○○○○이 사내이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며 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 표준액인 9억 1,738만원보다 4억 6,065만원 적은 4억 5,673만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2,119만원을 과소 납부하였는데도 미부과
-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위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한 농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지를 취득농지로부터 20km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 11명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농지로부터 20km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감면조건을 위반하였는데도 취득세 814만원을 미추징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누락 되거나, 감면요건 위반으로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5,875만원을 부과(추징)하도록 “시정요구”

7 ○○지구 ○○개선사업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1. ○○지구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재무과, 건설도시과)은 '18. 12월 '○○지구 ○○개선사업'을 위해 ○○건설(주)과 장기계속공사 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17억 1,831만원)
-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특허 등이 포함된 공사는 지자체장이 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위 사업 추진 시 특허공법을 반영하면서 실시설계 준공일('18. 12. 17.) 이전 특허 사용협약 미체결 및 협약 내용을 입찰 공고문('18. 12. 18.)에 미명시
-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20. 3. 18. 특허제품을 구매 하면서 대체품 검토 없이 (주)○○○○ 제품(공압식 가동보)을 수의계약(1억 4,200만원)하여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상실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지자체장은 부도, 영업 등록 취소 등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계약상대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말소'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20. 11월)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
-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에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 대금 지급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20. 12월에 계약상대자와 타절정산을 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4,278만원)로 향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초래 우려

2. ○○○○거리 조성사업 설계변경 계약 부적정

- 위 군(재무과, 보건소)은 '19. 11월 '○○○○거리 조성사업'을 ○○○○(주)과 계약 체결 후 추진(1억 9,369만원)
-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보건소)은 당초에 없는 새로운 과업(○○시공)을 추가하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실정보고와 그에 따른 세부검토 없이 부당하게 설계변경 추진
 - 또한 재무과는 보건소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실정보고와 세부검토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면밀한 검토없이 부당하게 변경계약('20. 3월)
-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액이 당초 계약금액(1억 9,369만원)보다 1억 3,140만원 증액(3억 2,509만원, 증 68%)되는 결과 초래

3.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변경계약 추진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사업부서에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계약 업무 추진
-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고 사업기간 연장 시 계약 종료 전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경제과)은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19. 6월)의 과업량이 감소되었는데도 과업기간 내 설계변경 미이행
 - 또한 재무과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계약기간 종료일('19. 7. 31.)로부터 68일이 경과 후 부당하게 계약('19. 10. 7.)하여 대금 지급(2,320만원)
 - 그리고 '○○○○장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20. 5월)을 계약기간 종료일('20. 7. 11.)로부터 18일 경과한 후 변경계약('20. 7. 29.)
- 그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어야 할 계약 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 4건의 계약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팀장 “경징계요구” 및 나머지 계약부서 (6명) 및 사업부서(3명) 담당자 9명 “훈계요구”

8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물)은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수산물○○○○○○센터 건립사업(60억원)을 추진
- 「수산물○○○○○○센터건립사업 세부지침」 제Ⅱ조에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업회사법인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자가 어업회사법인일 경우는 사업 신청년도 이전 3개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사업 실적을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물)은 사업대상자(어업회사법인)의 사업 신청년도 이전 3개년 동안 판매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 및 선정되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까지 하는 등 관리 소홀

[표]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지원 명세

법인설립일자	사업신청일자 (선정일자)	보조사업 신청자	보조금 교부	사업비
2018.00.00.	2018.00.00. (2018.00.00.)	(주)○○○	2018.00.00.	60억원 (국비 24, 도비 3.6, 군비 14.4, 자담 18)

- 그로 인하여 동일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참여기회를 잃게 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 관련부서에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시 신청자격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 어업인과 소비자의 공익증진에 부합한 사업으로, 담당자가 중앙부처를 5회 방문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쳤고 사적 이해 관계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분상 조치는 적극행정 면책 결정(훈계→불문)

9 장흥군○○회 및 ○○○○○회 활동비 지원 부적정

- 위 군(기획홍보실, 스포츠산업단)은 '18년부터 '21년까지 장흥군○○회 및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흥군○○회장 등 5명에게 활동비 2억 5,19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II.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절성 등을 실무검토 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편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홍보실, 스포츠산업단)은 '18년부터 '21년까지 ○○회장 등 5명의 활동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보조금을 실무검토 없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억 5,190만원을 편성하여 부당 지원
- 그로 인하여 법령에 교부할 수 없는 활동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특혜 의혹을 초래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활동비를 부당 지원한 당시 담당팀장 “훈계요구”
☞ 활동비 집행잔액(5,136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0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농산과, 농업기술센터)은 '18년부터 '20년까지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1. 공사 및 물품계약 체결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규정」 제57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2억원 초과 공사 및 2천만원 초과 물품구매는 계약대행(지자체)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산과, 농업기술센터)은 '18년부터 '20년까지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10건, 11억원)과 나라장터를 이용하면서 적격심사 절차 없이 최저가 입찰(7건, 33억원) 및 나라장터가 아닌 누리장터를 이용한 계약(2건, 7억원)을 하였는데도 방치하여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우려 초래

2. 민간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규정」 제54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면 반납하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증빙자료를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산과, 농업기술센터)은 '18년부터 '19년까지 4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송금하여 집행하도록 하였고, 6개 보조사업자에 대해 이자 정산도 미 실시
 - 또한 3개 보조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로 허위 일반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였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2,485만원 부당 집행
- 같은 규정 제63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금 집행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기술센터)은 '19년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361만원을 환급을 받았는데도 미 회수

-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훈계요구”
- ☞ 부당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2,485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361만원) 등 총 2,84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1 개발행위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년 5월부터 '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1,12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11건 1,215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 총 13건 중 : 매입불가 7건 894만원(준공), 매입가능 4건 321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 미완료 시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5월부터 '21년 4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43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56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로 예치된 4건의 이행보증증권 6,800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

-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 및 담당팀장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해 보증기한 연장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12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18년 5월부터 '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192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과다 집행된 금액 감액·반환 업무를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 목적 외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사진 재사용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18년 5월부터 '21년 1월까지 47개 사업장에서 8,125만원을 텀카, PE드럼, PE헨스 등으로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
- 또한 7개 사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3건), 사진 재사용(4건) 등으로 1,724만원을 부당 집행하였는데도 관리 소홀
- 그 결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 운영에 지장 초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훈계요구”
- ☞ 담당부서에 과다 집행된 사업비 9,849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3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도사업소)은 '18년 5월부터 '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4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영산강청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도사업소)은 '16. 12월부터 '19. 10월까지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을 환경부 승인없이 4회 변경
-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공사가 아니면 변경 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도사업소)은 '19년 2월과 '19년 10월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5개 마을을 별도 사업으로 미발주하고 변경 계약하여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미부합되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도사업소)은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등 2건에서 관보호공과 흙막이가 미시공되었는데도 5,318만원을 미회수
 - 또한 '○○ ○○관거 정비사업' 등 2건에서 기존 담장 헐기·복구 미실시 및 불필요한 흙막이 시설 제외로 3,128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그 결과 보조금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되었고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8,445만원의 예산 낭비

☞ 과다 집행된 5,138만원은 회수, 3,128만원은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5개 마을(189명) 주민들에 대한 공익증진 사업으로, 당시 장흥군 저수율이 28%로 먹는물 공급이 시급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임이 인정되고, 사적이해 관계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분상 조치는 적극행정 면책 결정(훈계→불문)

3. 모범 사례

1 | 아열대 신소득 작목 「애플망고」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애플망고」 재배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애플망고」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소비자 기호도 변화로 아열대 과일 소비 지속적 증가
- 아열대 과수 작목* 중 「애플망고」는 고소득 품목**으로 신소득 틈새 작목으로 재배 단지화 필요

* (아열대 과수 작목) 레드향, 구아바, 천혜향, 무화과, 비파, 애플망고, 바나나 등

** ('16년 농촌진흥청 소득자료 분석 수익성) 망고의 경우 1,000㎡당 28,132천원

□ 사업개요

- ('16~'21년) 「애플망고」 재배농가 : 1농가(3,300㎡), 450주
 - (사업액) 266백만원 (국비 2, 도비 12, 군비 119, 자담 133)
 - (사업내용) 하우스조성, 난방시설, 환풍·양액시설 묘목구입 등
- ('21~'22년) 「애플망고」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 3농가(10,000㎡), 2,000주
 - (사업액) 1,500백만원 (도비 500, 군비 550, 자담 450)
 - (지원내용) 하우스조성, 난방시설, 관수관비시설, 양액시설, 묘목구입 등
 - (조성위치)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68번지 일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애플망고」 생산량 증가 및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 (생산량) ('20년) 3톤 → ('21년 예상) 6톤
 - (순소득) ('20년) 180백만원 → ('21년 예상) 300백만원 * 가락도매시장 위탁판매

□ 향후계획

- 애플망고 작목 특성 등 재배기술(토경·양액재배) 및 경영지도 체계적 관리를 매뉴얼화하여 확대 보급
- 아열대 과수 단지화를 통해 특화작물 집중 육성으로 소득증대 및 토요시장 연계로 체험관광 활용

□ 애플망고 재배농가 사진자료



국내 애플망고 (양액재배시설)

2 | 안중근의사 국내 유일사당 해동사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 안중근의사 국내 유일 사당인 해동사를 역사문화자원으로 개발
-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사·의향·문화 교육의장 조성

□ 추진배경

- 대한독립 시발점 /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사
※ 1909. 10. 26.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10. 3. 26. 안중근의사 순국
- 안중근의사 묘지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장소(제사) 부재
※ 1955년 죽산안씨 안홍천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이를 알리고 친필을 받음(해동명월)
- 유족 안현생(딸), 안춘생(조카)씨가 위패와 영정을 해동사에 모시게 됨
※ 67년(1955년~2021년) 동안 해동사에서 안중근의사 추모 / 국내 유일의 사당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2019) 되고, 문화체육관광부(2020)에 건의하여 안중근의사 애국사상 전국적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안중근의사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비 반영 70억원(국비 35, 군비 35)
※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50-1-51,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애국탐방로 L=800m, 추모공원, 추모역사관 등
- 사업비 : 70억원(국비 35, 군비 35)
- 위치 : 장동면 만년리 600-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추진사항

-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확정(70억) : '17. 6.
- 실시설계 용역, 관련부처 행정협의 : '19. 6. ~ '20. 2.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전라남도 : '20. 2. ~ '20. 9.
- 2020년 해동사 방문의 해 추진 : '20. 3. ~ '21. 12.

- 역사문화자원 추모공간 조성사업 시행 : '20. 3. ~ '21. 12.
 ⇒ 안중근의사 위패를 모시는 국내 유일 사당인 해동사를 역사적 가치가
 숨쉬는 추모공원 마련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안중근의사 서거 111주년 행사 추진 : '21. 3.
 ⇒ 교육청(학생)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애국탐방로 적기 조성

□ 기대효과

- 정남진 장흥 의향 브랜드화, 교육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역사·
 문화 관광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 토요일시장, 우드랜드, 물축제 등과 역사교육을 연계한 가족단위 체
 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성과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22
② 징계 및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기관경고)	26
③ 지방○○○○관 승진임용 부적정(훈계)	31
④ 산림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4
⑤ 무허가 축산 농가 행정처분 미실시(통보)	39
⑥ 조경식재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42
⑦ 피복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46
⑧ 농어촌 빈집 관리·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미흡(개선)	48
⑨ 가축분뇨 업무처리 부적정(개선)	56
⑩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부적정(주의)	58
⑪ 유가보조금 및 과태료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62
⑫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67
⑬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시정)	71
⑭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73
⑮ ○○지구 ○○개선사업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경징계, 훈계)	79

⑩ 장흥군 출연기관 회계사무 처리 부적정(개선)	92
⑪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개선)	95
⑫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99
⑬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07
⑭ 장흥군○○회 및 ○○○○○회 활동비 지원 부적정(훈계, 시정)	109
⑮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112
⑯ 농촌 ○○○ ○○○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통보)	121
⑰ 도로점용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127
⑱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31
㉀ 옥외광고물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36
㉁ 개발행위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41
㉂ 공공건축사업 용역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145
㉃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훈계, 시정)	148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53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지역경제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 7월부터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21. 3월말 기준으로 [표 1] “2019 ~ 2021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0,000백만원이며, 할인율은 [표 2] “2019 ~ 2021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할인율 명세”와 같이 판매 시점에 따라 6%에서 10%로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 1] 2019 ~ 2021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도	발행액			판매액			사용액(환전액)		
	계	지류	전자	계	지류	전자	계	지류	전자
계	60,000	60,000	0	39,155	39,155	0	36,752	36,752	0
2019	5,000	5,000	0	2,147	2,147	0	56	56	0
2020	25,000	25,000	0	26,370	26,370	0	27,588	27,588	0
2021	30,000	30,000	0	10,638	10,638	0	9,108	9,108	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19 ~ 2021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할인율 명세

(단위 : 백만원)

판매기간	할인율	판매액	판매기간	할인율	판매액
계		39,155			
2019. 11월 ~ 12월	6%	2,147	2020. 4월 ~ 5월	6%	7,930
2020. 1월 ~ 3월	6~10%	5,881	2020. 6월 ~ 2021. 3월	10%	23,19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개별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소위 ‘상품권 깡’)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와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000, 2021. 00. 00.)하였고,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과-000(2021. 00. 00.)를 통해 장흥군을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에 같은 내용을 시달하였다.

따라서 장흥군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지역경제과)은 2021. 5월 전남도 종합감사 기간에 상품권 부정가맹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운영 프로그램¹⁾’을 이용해 실시한 결과,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²⁾ 중 [별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명세”와 같이 3개 업체가 가족(배우자, 자녀) 등 지인을 통해 소위 ‘상품권 깡’ 행위로 18,500천원을 부정유통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 계획 공문(중소벤처기업과-000(2021. 00. 00.)과 관련하여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지도단속 운영 계획’(지역경제과-00000, 2021. 00. 00)을 수립해 2021. 3. 16.부터 3. 31.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모니터링과 의심가맹점 조사 등 단속활동을 실시는 하였지만,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 처분실적이 전혀 없다고 전남도에 단속 결과를 제출(장흥군 지역경제과-00000, 2021. 00. 00.)하였다.

1) 구매업체 : (주)○○○○○통신, 계약기간 : 2019. 11월 ~ 2021. 6월

2) 1인당 구매한도로 상품권을 구입해 1개의 개별가맹점(미용업, 소매점 등)에서 모두 사용한 경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정남진장홍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과 사용자의 ‘상품권 깡’ 등에 대한 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홍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홍군수는 정남진장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3개 업체)과 사용자(25명)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상품권 할인액 환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기관경고

제 목 징계 및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요구에 대하여 징계처분부서(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2018. 6월부터 2021. 1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정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1)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 범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

1)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따르면 실제로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에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징계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결 결과를 처리할 때는 우선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에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총무과)은 2018. 6월부터 2020. 9월까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로부터 [별표 1] “징계 불복절차를 위반한 징계 명세”와 같이 총 9건의 징계 요구를 받아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 오인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에 통보하며 징계대상자에게도 징계처분을 함께 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위반’ 및 ‘○○○’ 사건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되었는데도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심사 청구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소홀히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6급 직렬 불부합 인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장흥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급·직렬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 임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총무과)는 2021. 5. 6. 감사일 현재 [별표 2] “장흥군 6급 팀장 직위 직렬불부합 명세”와 같이 6급 팀장급 총 154개 직위 중 25개 직위(16.2%)에 대해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6급을 임용 가능한 직위는 최대 11명임에도 3명이 초과된 14명을, 지방○○○○6급을 임용 가능한 직위는 최대 6명임에도 2명이 초과된 8명을 6급 팀장 직위에 임용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6급과 지방○○○○6급의 경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상 6급 팀장 직위에 임용할 수 없으나, 2021. 5. 6. 감사일 현재 지방○○○○6급 1명과 지방○○○○6급 1명을 6급 팀장 직위인 ○○○○과 ○○○○팀장과 ○○면 ○○팀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조직 및 조직원의 전문성 저하에 따른 능률 저하 우려 및 보직에 대한 예측과 안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6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과다 산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소속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6급 정원 내에서 임용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총무과)은 [표] “6급 승진의결 부당 명세”와 같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5급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6급 공무원은 아직 직급승진이 되지 않아 6급 결원에 포함할 수 없는데도 이를 6급 결원으로 포함하여 2020. 6. 26. 정당한 승진요인 15명보다 부당하게 1명을 초과하여 16명을 승진시켰으며, 2020. 12. 30. 정당한 승진요인 9명보다 부당하게 4명을 초과하여 13명을 승진 의결하여 승진 임용 하였다.

[표] 6급 승진의결 부당 명세

(단위 : 명)

승진의결일	6급 정원 (가)	6급 현원			6급 결원			승진 의결	비고 (과원 해소일)
		실제현원 (나=A-B)	현원 (A)	근속승진 현원(B)	결원 (가-나)	추가 요인	총 결원		
2020. 6. 26.	166	157	196	39	△9	△6	△15	16	초과 1 (2020. 7. 1.)
2020. 12 .30.	166	159	197	38	△7	△2	△9	13	초과 4 (2021. 2. 2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7급 나머지 직원들이 정당하게 다음 6급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5급 승진후보자가 실제 승진임용되기 전까지 최대 약 2개월가량 6급 과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징계의결 후 징계요구부서에 통보 한 후 심사요구가 없을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하고, 업무의 성격상 복수직렬 지정이 가능한 경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하여 직렬 불부합률을 감소시키며, 5급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수에 대하여는 6급 결원 요인으로 미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앞으로 법령에 따라 징계업무를 추진하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규정한 직위별 직급을 준수하며, 승진 심사 시 정당한 결원을 산정하여 승진임용을 하도록 징계 및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지방○○○○관 승진임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총무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읍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8. 00. 00. 인사위원회에서 지방○○○○사 ‘○○○’과 ‘○○○’을 지방○○○○관 승진대상자로 의결한 후, ‘○○○’은 2019. 00. 00.에 ‘○○○’은 2019. 00. 00.에 지방○○○○관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지방○○주사 ○○○은 2017. 1. 1.부터 2019. 6. 30.까지 총무과에서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2조 제1항1)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지방농촌지도사 공무원을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승진시킬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지도관 기본교육과정 훈련성적(30%)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 후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총무과)는 2018. 00. 00.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관 승진대상자로 의결되어 지도관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과 ‘○○○’ 중 1명을 2019. 00. 00. 지방○○○○관으로 승진시키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지도관 기본교육과정 훈련성적(30%)을 비율에 따라 반영한 순위가 아닌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과 지도관 기본교육과정 훈련성적을 단순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여 지방○○○○관 승진임용명부 2위인 ‘○○○’을 지방○○○○관으로 부당하게 먼저 임용하였고 1위였던 ‘○○○’은 2019. 00. 00. 임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6개월의 승진임용 지연에 따라 ‘○○○’ 개인의 총 급여나 연금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 유발 및 지연되는 기간 중에 징계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승진임용을 못할 수도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1)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5. 4. 17. 개정) 제22조 제1항, 현재는 제23조 제1항(개정 2021. 4. 12.)

조치할 사항 장홍군수는 인사법령을 위반하여 지방○○○○관 승진인사 업무를 수행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산림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산림휴양과)

훈 계 대 상 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② 장흥군 ○○○○과 지방○○서기보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을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수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으로 국비보조금(6,180백만원)을 교부받아 수목을 식재하고 풀베기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조림 및 입목벌채 업무팀장으로, 지방○○서기보 ○○○는 2020. 1.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조림 및 입목벌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경제수 조림 등 산주 자부담금 미환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 「2018 ~ 2020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따르면 벌채 후 국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을 사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제림(유휴토지조림 포함) 조성 보조사업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경제수 조림을 위해 산주 또는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자부담을 징수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지별로 식재비, 묘목대금 등의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에 대하여 산주에게 추가 징수 및 환급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산림휴양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018 ~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미반납액 명세”와 같이 산주 자부담으로 95,238천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최종 집행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산주 자부담금 정산 차액을 산주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산주 자부담금 정산 차액을 환급하지 않아 82명에게 약 23,783천원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였다.

[표] 2018 ~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미반납액 명세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자부담 부과인원	총 사업비	자부담		사업 정산		자부담 미반납액
				부과액	비율 (%)	집행액	잔 액	
계	3개 사업	-	2,157,918	95,238		1,634,872	523,046	23,783
2018	○○○○ 20○○년 장흥 경제수 조림사업	○○○ 등 36	923,562	31,603	3.42	745,664	177,898	6,084
2019	20○○년 경제수 조림사업	○○○ 등 27	743,436	48,335	6.50	538,390	205,046	13,328
2020	20○○년 경제수 조림사업	○○○ 등 19	490,920	15,300	3.12	350,818	140,102	4,371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조림지 풀베기 사업 적기 미실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청 훈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III-1-나.에 따르면 풀베기 사업의 작업 시기는 1회 실행지의 경우 5월부터 7월에 실시하고, 2회 실행지의 경우 8월 또는 9월 초순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적기인 5월부터 7월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며, 9월 초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산림휴양과)은 [별표 1] “2019 ~ 2020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34건(230.17ha)의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풀베기 사업 적기가 아닌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에 사업을 전부 추진하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

그로 인하여 풀베기 사업의 권장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 실행으로 조림 이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한 나무가 경쟁에서 도태되어 피압 되는 등 생육을 돕기 위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효과를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입목벌채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산지일시사용지역에 녹화피복 등 토

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의 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복구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지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85호, 2016. 9. 20.)」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목벌채허가기간 만료지 중 운반로 및 작업로를 복구하기 위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대상지에 대하여 복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산림휴양과)은 [별표 2] “2018 ~ 2020년 입목벌채허가지 등 운반로 개설 및 복구 명세”와 같이 복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한 172개소(62.22km)에 대하여 허가·신고자로부터 복구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하게 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복구되어야 할 임산물 운반로가 복구되지 않아 장마 및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2020. 8월 경 [사진] “운반로 내 땅 밀림 등 발생 현황”과 같이 경미한 땅 밀림 현상(○○면 ○○리 산○○번지 등 4개소)이 발생하여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사진] 운반로 내 땅 밀림 등 발생 현황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홍군수는

- ① 조립사업 산주 자부담금 집행잔액 미환급, 운반로의 복구여부 확인·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지방○○서기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조립사업 산주 자부담금 집행잔액 23,783,000원을 산주에게 환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통보

제 목 무허가 축산 농가 행정처분 미 실시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축산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시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5. 개정, 2015. 3. 25. 시행) 개정령을 통하여 2018. 3.

24.까지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례의 유예 기간을 부여(2019. 9. 27.까지, 2020. 9. 27.까지)하였으며,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 농가에 한하여 2021. 4. 30.까지 별도 관리기간을 부여하는 등 무허가 축사가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방안 송부(환경부 물환경정책과-4305호, 2020. 9. 29.)’ 공문을 통하여 적법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지 자체 평가 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농가), 적법화 미진행 농가(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치계획(사용중지, 폐업 등 행정 처분)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따라서 장흥군은 2020. 9. 29.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83개 농가(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와 폐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축산사업소)은 [별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 명세”와 같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폐업 등의 조치를 한 5개 농가(자진폐업 3, 적법화 완료 2)를 제외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의지가 없는 78개 농가에 대하여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로 인해 악취·환경오염 등 생활불편 민원이 2018년부터 2021. 1월까지 48건이 발생하였고, 78개 농가의 가축분뇨(일일 63.08m³)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무허가 축사를 경영하고 있는 78개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업)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조경식재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재무과, 회진면, 유치면)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③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④ 장흥군 ○○면 지방○○주사보 ○○○

⑤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경 식재와 경로당, 팔각정 등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326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조경 식재사업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에서 시설 유지관리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계약업무 팀장으로, 지방○○주사보 ○○○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면에서 시설 유지관리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
○면에서 조경 식재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
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
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동일공
정의 사업에 대하여 분할계약이 아닌 일괄로 계약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회진면, 유치면)은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동일시기 및 공정이 같은 조경식재·시설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조경식재·시설물유지관리사업 분할발주 명세”와 같이 ‘국도○○호선 주변 ○○
○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은 일괄발주 대상 사업인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을 의뢰하였다.

또한 재무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휴양과 등 4개 발주부서에서 계
약 의뢰한 사업의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공정, 사업위치, 추정가격 등을 검토하
여 적정하게 발주된 사업인지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검
토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조경식재·시설물유지관리사업 분할발주 명세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주요공정	계약일시	계약방법	계약업체	예정가격	분할공사 예정가격 합산액	합산결과 적정 계약방법	관련 부서
계	13개 사업	2종			3개 업체				
1	2000년 000경로당 보수 공사 시행	시설물 보수	2018.00.00.	수의계약	00	6,950	38,561	경쟁입찰	00면
2	2000년 000경로당 보수 공사 시행	시설물 보수	2018.00.00.	"	00	12,990			
3	2000년 000경로당 개보수 공사 시행	시설물 보수	2018.00.00.	"	00	18,621			
4	국도00호선 주변 000 조성사업	조경식재	2019.00.00.	"	00	21,861	31,761	"	00 00과
5	장흥 00마을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조경식재	2019.00.00.	"	★★	9,900			
6	00 000 동산 정비 사업	조경식재	2019.00.00.	"	00	9,300	27,300	"	00면
7	00면 00 00단지 조성사업	조경식재	2019.00.00.	"	00	18,000			
8	0000공원 00장애 수목 00조절사업	조경식재	2020.00.00.	"	00	18,045	29,674	"	00 00과
9	00000000 주변 수목 수형조절사업	조경식재	2020.00.00.	"	00	11,629			
10	000 식재예정지 법면 정비사업	조경식재	2020.00.00.	"	00	21,315	40,824	"	00 00과
11	000번 법면 000 이식사업	조경식재	2020.00.00.	"	00	19,509			
12	00 00 기부수목 이식	조경식재	2021.00.00.	"	00	21,630	43,610	"	00 00과
13	00 00 대교목 이식	조경식재	2021.00.00.	"	00	21,98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흥군 관내 동종업체(조경식재공사업 29개, 시설물유지관리업 22개)의 참여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일괄발주 대상인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과 계약업무를 소홀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피복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장평면)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활한 공사현장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피복비 75건 54,994천원을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피복비¹⁾ 예산은 시설부대비(401-03)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 구매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공무원에게 피복비를 집행할 때에는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게만 공사기간, 내용연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피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 등 11개 부서)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사가 아닌 용역사업인 ‘○○○○공원 조성사업’의 감독공무원 2명에게 공사현장 감독 명목으로 598,000원의 안전화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별표] “시설부대비 중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피복비 명세”와 같이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으로 명받지 않았는데도 33명에게 총 14,531,800원의 피복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명받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피복비 14,531,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략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농어촌 빈집 관리·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미흡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건설도시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라남도로부터 빈집 실태조사계획이 통보되면 자체적으로 빈집 철거에 한정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에 따르면 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되, 그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되,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지역경제과, 농산과)은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한 적이 없다.

또한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도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추진할 총괄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부서간 이견으로 서로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별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민원봉사과는 매년 전남도로부터 빈집 실태조사계획이 통보되면 자체적으로 빈집 철거에 한정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건설도시과는 2019. 1월경 자기부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빈집 정비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부서(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농산과)도 감사일인 2021. 5. 6.까지 빈집 정비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빈집 정비방안이 포함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별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3. 빈집 정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2 및 제64조의5에 따르면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해 빈집의 관리상황 및 방치기간 소유자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

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지방세, 수도·전기요금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18년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남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와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나주시·곡성군과 빈집실태조사 용역계약(약 50,000천원)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빈집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거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지방세, 수도·전기요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빈집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빈집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련예산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위와 같은 조사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읍면 마을이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함으로써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표 1] “연도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명세”와 같이 적게는 1,930동에서 많게는 2,397동이나 차이나게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연도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명세

(단위 : 동)

연도별	마을이장을 통한 조사결과(A)	통계청 공개자료(B)	차이(A-B)
2017	270	2,200	1,930
2018	198	2,595	2,397
2019	395	2,456	2,061
2020	445	-	-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빈집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빈집 정비 및 활성화방

안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빈집 철거 등 정비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2에 따르면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수리·활용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 실적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편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빈집 철거 등 정비를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빈집정비를 하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사유재산인 빈집정비가 어렵다는 사유로 [표 2] “연도별 빈집수 및 정비실적 명세”와 같이 통계청 공개자료 대비 적게는 1.2%(31동)에서 많게는 1.8%(48동)까지 소극적인 정비로 빈집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2] 연도별 빈집수 및 정비실적 명세

(단위 : 동, %)

연도별	빈 집 수		정 비 실 적		
	장흥군자체 조사결과	통 계 청 공개자료	동수	비율	
				장흥군 대비	통계청 대비
2017	270	2,200	36	13.3	1.6
2018	198	2,595	48	24.2	1.8
2019	395	2,456	31	7.8	1.2
2020	445	-	40	8.9	-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빈집 철거 등 정비를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 소홀로 빈집이 방치되어 붕괴위험과 같은 안전문제와 마을경관과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빈집에 관한 자료 및 정보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6에 따르면 군수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농촌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도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고 빈집에 관한 자료 및 정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빈집 자료 및 정보관리 소홀로 인한 빈집 정비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6. 빈집정비 관련 예산 확보 및 조직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의 빈집 관련 공개자료에 따르면 장흥군에는 [표 2] “연도별 빈집수 및 정비실적 명세”와 같이 2019년도에 2,456동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농촌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정비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빈집정비 관련 예산과 인력이 [표 3] “연도별 빈집정비 예산 및 정비인력 비율 명세”와 같이 빈집정비 예산은 전체예산대비 0.01%에 불과하고, 정비인력은 전체 장흥군 공무원 수 대비 0.1%로 매우 열악하는 등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 결여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5-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연도별 빈집정비 예산 및 정비인력 비율 명세

(단위 : 천원, 명, %)

연도별	빈집 정비예산	빈집 정비인력	비 율	
			전체예산대비	전체인력대비
2017	31,797	1	0.01	0.1
2018	48,000	1	0.01	0.1
2019	31,000	1	0.01	0.1
2020	39,644	1	0.01	0.1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7.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등에 따르면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증가하는 빈집 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빈집은 행 운영, 노인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 청년 문화공간, 텃밭·주차장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 마련 등 다양한 시책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군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 등)은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도 '2 ~ '7까지와 같이 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 확보, 빈집에 관한 자료 및 정보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소홀하게 추진하여 빈집관련 활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2'부터 '7'까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8.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빈집 정비 관련예산과 인력확보가 쉽지 않았고, 빈집 정비 및 실태조사 등에 소홀함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앞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54조 등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 ②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2 및 제64조의5 등에 따라 빈집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거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지방세, 수도·전기요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③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등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수리·활용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빈집 철거 등 정비를 위한 예산과 인

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④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6 등에 따라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등에 따라 농어촌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타 지자체와 같이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 등 다양한 시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가축분뇨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축산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유통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축산정책과)는 2019. 00. 00.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¹⁾ 공문을 보내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유통

1) 전라남도 축산정책과-0000호(2019. 00. 00.)

협의체를 개최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흥군은 2년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유통협의체를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조례로 정하여 유통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축산사업소)은 [표]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 미수립 및 유통협의체 미운영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유통협의체는 구성만 한 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

[표]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 미수립 및 유통협의체 미운영 명세

연도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여부	유통협의체		비고
		운영건수	운영일자	
2018	부	-	-	유통협의체 구성 (2019. 00. 00.)
2019	부	-	-	
2020	부	-	-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8년부터 2021. 4월까지 가축분뇨 야적 및 악취 민원(63건)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조례로 제정하여 유통협의체가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환경관리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 지도·점검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2년에 1회, 최대 1년에 4회 등 각 등급에 따라 점검횟수²⁾를 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우수관리)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중점관리)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2~3회 이상 받은 경우,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특별관리공사장 등

2)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기타지역의 경우) : 우수관리(허가대상 1회/년, 신고대상 1회/2년), 일반관리(허가

따라서 장흥군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매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등급별로 점검횟수를 준수하여 성실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환경관리과)은 [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점검대상 3,344개소 중 504개소만을 점검하여 평균 점검율이 15%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체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명세

연도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대상수	실시	미실시	대상수	실시	미실시	대상수	실시	미실시
계	3,344	504 (15%)	2,840 (85%)	1,158	33 (2.8%)	1,125 (97.2%)	2,186	471 (21.5%)	1,715 (78.5%)
2018	1,003	474	529	344	11	333	659	463	196
2019	1,148	12	1,136	397	7	390	751	5	746
2020	1,193	18	1,175	417	15	402	776	3	773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기한 미준수 및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 한 경우에는 ① 자체 지도·점검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③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는 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대상 2회/년, 신고대상 1회/년), 중점관리(허가대상 4회/년, 신고대상 2회/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환경관리과)은 [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명세”와 같이 위반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최소 3일에서 최대 141일까지 지연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장흥군 홈페이지에 2018년 지도·점검 실적만 공개하고 그 이후 실적은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명세

연번	사업장명	위 반 내 역	확인한 날 (통보받은 날)	행 정 처분일	처분내역	행정처분 소요일수 (일)	처리기한 경과일수 (일)
1	○○○	신고(변경) 미이행 (축종변경)	2018.00.00.	2018.00.00.	고발 및 사용중지	37	32
2	○○○	신고(변경)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미신고 -염소사육)	2018.00.00.	2018.00.00.	고발 및 사용중지(1월) 과징금	28	23
3	○○○	허가(변경)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무허가 -소운동장)	2018.00.00.	2018.00.00.	고발 및 사용중지(1월) 과징금	28	23
4	○○○	액비화 기준 위반(부숙도)	2018.00.00.	2018.00.00.	과태료	10	5
5	○○○	관리기준 위반(퇴비야적)	2019.00.00.	2019.00.00.	과태료	14	9
6	○○○	관리기준 위반(분뇨방치)	2019.00.00.	2019.00.00.	과태료	8	3
7	○○○	관리기준 위반 (분뇨관리위반)	2019.00.00.	2019.00.00.	과태료	9	4
8	○○○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증축)	2019.00.00.	2019.00.00.	과태료	16	11
9	○○○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증축)	2019.00.00.	2019.00.00.	과태료	16	11
10	○○○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증축)	2019.00.00.	2019.00.00.	과태료	16	11
11	○○○	퇴배액비화기준 위반	2020.00.00.	2020.00.00.	과태료	9	4
12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설치	2020.00.00.	2020.00.00.	사용중지 및 사건송치	41	36
13	○○○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유출)	2020.00.00.	2020.00.00.	사건송치	146	141
14	○○○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수거 미이행 및 유출)	2020.00.00.	2020.00.00.	과태료	92	8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미온적 지도·점검, 행정처분 지연 및 결과 미공개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사업자들의 경각심 저하와 군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등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등급별 정기 지도·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기한 내에 조치하며, 지도·점검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유가보조금 및 과태료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재난안전과)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과 지방○○서기보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관리와 자동차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서기보 ○○○은 2020. 10. 23.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유가보조금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①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 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②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

위 등을 포함하여 총 10가지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평균거래량 2배 충전,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1회 72리터 초과 충전, 1일 120리터 초과 충전, 사업 구역 외 충전 등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확인 될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재난안전과)에서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여객자동차 유형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명세”와 같이 1일 4회 이상 충전 2건, 1일 120리터 초과 충전 10건, 사업구역 외 충전 23건, 지역거래량 2배 초과 충전 78건 등 총 113건 22,399,663원의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역이 확인되었는데도 2018년 6월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건도 사실 확인 및 행정상 제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실추시켰다.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보유자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¹⁾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법령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최소 9천원부터 최대 2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하고, 미가입(지연)한 일수를 확인하여 [별표 5] “자동차 의무보험 등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재난안전과)은 [별표 6] “최근 3년 간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가입자 과태료 처분 미이행 명세”와 같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가입자에게 328건 65,975,4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4. 타 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²⁾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3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보험개발원 제공)을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등 가입명령서(또는 가입촉구서)를 발송

2) 일정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을 말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2년) 등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³⁾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8. 2. 22.부터 2020. 2. 16.까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부과 관련 공문 중 장흥군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54건⁴⁾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장흥군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한 차량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재난안전과)은 [별표 7] “타 자치단체 통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54건 중 23건이 자동차 검사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2,9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장흥군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목적인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보 ○○○

3)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2]

4) 자동차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시·군·구는 위반 사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면서 수신처를 법령위반 차량의 관할 시·군·구로 지정하여야 하나, 일부 시·군·구가 수신처를 전국 시·군·구로 지정하여 장흥군이 수신한 전자문서 중 상당수는 장흥군과 관련 없음. 따라서 과태료 담당자는 수신문서의 내용을 확인,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을 혼계하고(혼계)

②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113건 22,399,663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유가보조금 환수,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과누락된 과태료 건(351건, 68,955,400원)은 부과·징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7]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민원봉사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 단독주택인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¹⁾하도록 되어 있다.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단독주택)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 14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 계약자 및 분양공급 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 지역의 시장·군수²⁾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 자료를 받은 시장·군수는 즉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표 1] “공동주택(분양) 건설사업 계획 승인내역”과 같이 2016. 8. 16. 장흥군 원도리 113-1 외 17 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8. 10. 23.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

[표 1] 공동주택(분양) 건설사업 계획 승인내역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세대수	승인일	비고
○○읍 ○○리 000-0외 00	(주)○○○○○○○	2016.00.00. ~2018.00.00.	000	2018.00.00.	장흥○○○ ○○○○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장흥군은 관할구역 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분양공급 계약자 및 분양공급 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위 공동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표 2] “학교용지부담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학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교용지부담금 593,072,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학교용지부담금 미부과 명세

(단위 : 원)

주택형 (㎡)	동	공 급 세대수	층구분	주택형별 분 양 가	총분양가	주택형별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미부과 총액
계		374			74,134,000,000		593,072,000
00.00	000동	12	1층	152,000,000	1,824,000,000	1,216,000	14,592,000
		12	2층	158,000,000	1,896,000,000	1,264,000	15,168,000
	000동	24	3 ~ 4층	164,000,000	3,936,000,000	1,312,000	31,488,000
		108	5 ~ 13층	169,000,000	18,252,000,000	1,352,000	146,016,000
	000동	32	14층 이상	175,000,000	5,600,000,000	1,400,000	44,800,000
00.00	000동	10	1층	195,000,000	1,950,000,000	1,560,000	15,600,000
		10	2층	199,700,000	1,997,000,000	1,597,600	15,976,000
	000동	20	3 ~ 4층	212,000,000	4,240,000,000	1,696,000	33,920,000
		90	5 ~ 13층	217,500,000	19,575,000,000	1,740,000	156,600,000
	000동	24	14층 이상	223,500,000	5,364,000,000	1,788,000	42,912,000
000.00	000동	2	1층	287,000,000	574,000,000	2,296,000	4,592,000
		2	2층	290,000,000	580,000,000	2,320,000	4,640,000
		4	3 ~ 4층	294,000,000	1,176,000,000	2,352,000	9,408,000
		18	5 ~ 13층	298,000,000	5,364,000,000	2,384,000	42,912,000
		6	14층 이상	301,000,000	1,806,000,000	2,408,000	14,448,000

자료: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위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에 학생수용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기존학교시설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

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여부는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권자인 장흥군수가 결정한 사항이지만, 장흥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3)의 확인을 위해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에 학생수용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그에 따른 회신을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행위는 「학교용지법」 제9조 제2항4)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전라남도 장흥군 교육장에게 위임하지 않아서 결국 권한없는 자에게 문의한 결과를 근거로 행한 행위이므로 장흥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위 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인지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한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면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최근 5년 동안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¹⁾을 신축한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수익사업용 건축물 및 야영장의 건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정남진 ○○도 관광지 ○○○○○ 내 휴게소(○○○○○), ○○ ○○휴양림 내 ○○시설 등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표] “2016 ~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와 같이 수익사업용 임대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약 89,388,831원²⁾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016 ~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

(단위 : 원)

사업장명	관리부서	신축일	건축비 지급내역			비고 (업종)
			계	공급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대상)	
합계	2곳		983,277,150	893,888,319	89,388,831	
○○도 관광지 내 ○○○○○	○○○○○과	2016.00.00.	246,345,690	223,950,627	22,395,063	부동산 임대업
○○ ○○휴양림 내 ○○시설	○○○○○과	2021.00.00.	736,931,460	669,937,692	66,993,768	부동산 임대업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준공일 이전 해당 건축물의 신축비용만으로 산정

그 결과 장흥군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여야 할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야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 세입총괄부서와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위 부동산의 매입 부가가치세 약 89,388,831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하고, 앞으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회계사(세무사) 협조를 받아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 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세무서의 환급액 인정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명세”와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명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8년	29,931	29,180	141	610
2019년	27,054	26,301	204	548
2020년	38,656	37,775	65	814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르면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는 취득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1천분의 20.2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선박을 취득한 자가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표 2]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부과 명세”와 같이 동력레저기구를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3,323,640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2]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부과 명세

(단위 : 원, 2021.4.27. 기준)

연번	과세물건	납세자	등록일	추징세액
계		8건		3,323,640
1	모터보트(선외기)	○○○	2020.00.00.	516,320
2	“	○○○	2020.00.00.	670,220
3	“	○○○	2021.00.00.	89,570
4	“	○○○	2019.00.00.	416,800
5	“	○○○	2020.00.00.	567,710
6	“	○○○	2021.00.00.	477,760
7	“	○○○	2021.00.00.	208,990
8	“	○○○ 외 3	2020.00.00.	376,27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별표]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명세”와 같이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 후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63건 26,099,290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소 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¹⁾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법인이 신고한 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를 검토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확인되면 「지방세기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①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②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직원 등으로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은 2018. 00. 00. 사내이사인 ○○○로부터 “○○읍 ○○리 000-0번지 토지(3,960㎡)와 건물(1,395㎡)”을 매입하면서, 취득금액 456,737,330원과 취득세 21,009,900원을 장흥군(재무과)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주식회사 ○○○○과 ○○○(사내이사) 간의 부동산 거래는 시가표준액 917,385,95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이 [표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소 부과 명세”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460,648,620원 적은 456,737,330원으로 과소 신고하고 취득세 21,189,840원을 과소 납부하였는데도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소 부과 명세

(단위 : 원, 2021.4.27. 기준)

거래당사자			취득일	과세물건	과소신고액	추징액
취득자	매도자	관계				
주식회사 ○○○○	○○○	사내 이사	2018.00.00	(토지, 건물) ○○읍 ○○리 000-0	460,648,620	21,189,84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5. 귀농인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표 4]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정대상 명세”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11명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감면 조건을 위반하였는데도 취득세 8,139,590원을 추정하지 않고 있다.

[표 4]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원, 2021.4.27. 기준)

연번	과세대상(토지)	납세자	취득일 (주소이전일)	추정대상 취득세액	추정사유
계	11건			8,139,590	
1	○○읍 ○○리 000-00번지 1594㎡	○○○	2016.01.22. (2018.08.22.)	375,000	주소이전 (경기 ○○)
2	○○읍 ○리 0-0번지 5511㎡	○○○	2016.01.25. (2017.04.05.)	675,000	“ (인천 ○○)
3	○○읍 ○○리 000-0번지외 1필지 3304㎡	○○○	2016.01.29. (2017.07.20.)	184,510	“ (서울 ○○구)
4	○○면 ○○리 000-0번지 1250㎡	○○○	2017.07.27. (2020.04.08.)	126,660	“ (충북 ○○)
5	○○읍 ○○리 00-0번지 외 2필지 4529㎡	○○○	2017.10.20. (2020.06.02.)	709,930	“ (경기 ○○)
6	○○읍 ○○리 000-0번지 2652㎡	○○○	2018.01.22. (2018.09.17.)	660,000	“ (전남 ○○)
7	○○면 ○○리 000-00번지 4090㎡	○○○	2018.06.18. (2020.04.02.)	1,905,000	“ (경기 ○○)
8	○○읍 ○○리 00번지 외 1필지 4671㎡	○○○	2018.07.10. (2021.01.14.)	630,000	“ (부산 ○○)
9	○○면 ○○리 00-0번지 813㎡	○○○	2018.07.16. (2018.08.16.)	1,476,000	“ (광주 ○○)
10	○○읍 ○○리 0000-0번지 외 1필지 1928㎡	○○○	2018.09.03. (2019.12.13.)	647,490	“ (경기 ○○○)
11	○○면 ○○리 000-0번지 외 1필지 4386㎡	○○○	2020.11.25. (2020.12.01.)	750,000	“ (서울 ○○구)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4. 27.) 기준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58,752,360원을 부과(추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징계·훈계요구

제 목 ○○지구 ○○개선사업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재무과, 건설도시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스포츠산업단)

징 계 대 상 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장흥군 ○○읍 지방○○주사 ○○○

② 장흥군 ○○사업소 지방○○주사 ○○○

③ 장흥군 ○○○○실 지방○○주사보 ○○○

④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⑤ 전라남도 ○○○○○ 지방○○주사보 ○○○
(前 장흥군 ○○과 지방○○서기)

⑥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⑦ 장흥군 ○○소 지방○○사무관 ○○○

⑧ 장흥군 ○○○○실 지방○○주사 ○○○

⑨ 장흥군 ○○○○○단 지방○○서기 ○○○

내 용

1. ○○지구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1) 업무개요

장흥군은 ○○면 ○○리 일원에 배수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자 ○○지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표 1] “○○지구 ○○개선사업 연차계약별 명세”와 같이 ○○○○(주)과 2018. 12. 27.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구 ○○개선사업 연차계약별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계약기간	준공(타절)금액	계약상대자
총괄분	1,718,313	2018. 12. 27. ~ 2021. 04. 07.	1,426,211	○○○○(주)
- 1차분	74,404	2018. 12. 27. ~ 2019. 06. 24.	74,404	
- 2차분	713,911	2019. 03. 15. ~ 2020. 03. 18.	713,911	
- 3차분	472,812	2020. 02. 11. ~ 2020. 12. 15.	354,838	
- 4차분	408,305	2020. 04. 16. ~ 2020. 12. 15.	283,058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공사 계약 담당자로, 지방○○주사 ○○○는 2018. 10. 1.부터 2020. 8. 7.까지 ○○과에서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계약 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공사·용역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지방○○주사 ○○○는 2019. 7.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지구 ○○개선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유사공법 검토 없이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사유로 수의계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특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반영 전에 해당 특허 등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에 대한 가격 및 성능 등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허·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발주 또는 사업부서)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및 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사목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특허공법이 포함된 사업 추진 시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했으며, 특허제품 구매 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건설도시과)은 ○○지구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¹⁾ 준공(2018. 12. 17.) 이전에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구 ○○개선사업 입찰 공고 시(2018. 12. 18.) 협약내용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전에 공법선정 심의회²⁾(2018. 12. 5.)에서 선정된 (주)○○○○의 공법(특허 제00-0000000호³⁾)이 아닌 같은 업체의 다른 공법(특

1) 사업비 71,468,000원(2018. 00. 00. ~ 00. 00.)

2) ○○면 ○○지구 ○○개선사업 공법선정계획(안), 서면심의 진행

3) 심의자료 및 평가집계표에는 공압식 가동보[(주)○○○○ 특허 제00-0000000호]가 1안으로 선정, 관련 서류철 상 평가집계표는 존재하나 해당 공법선정심의회 최종 결과에 대한 결재문서 부존재

허 제00호-00000000호, 특허 제00호-00000000호)을 수의계약을 위한 요청사유서에 기재하여 재무과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압식 가동보 구입을 요청하였다.

한편 재무과는 건설도시과에서 요청한 공압식 가동보 구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위한 요청사유서⁴⁾에 공법선정 심의회에서 선정한 공법(특허 제00-00000000호)이 아닌 동일업체의 다른 공법(특허 제00호-00000000호, 특허 제00호-00000000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특허제품으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인지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고 조달청에 (주)○○○○과 수의계약을 체결의뢰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유사 공법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구 ○○개선사업 3차분⁵⁾ 추진 시 사업부서(건설도시과)로부터 공압식 가동보를 특허제품이라는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요청받았는데 특허제품으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인지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고 (주)○○○○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하여 조달구매하였다.

(3)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 ○○지구 ○○개선사업(3차분) 가동보(고무보) 구입 협의 자료 제출(건설도시과-0000, 2020.00.00.)

5) 계약기간 : 2020. 00. 00. ~ 2020. 00. 00. / 계약금액 : 472,812천원 / 계약상대자 : ○○○○(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지구 ○○개선사업의 계약상대자인 ○○○○(주)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말소” 처분을 이유로 2020. 10. 13. 공사를 포기⁶⁾하자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0. 11. 30.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등 제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계약이행을 포기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향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구 ○○개선사업의 계약상대자인 ○○○○(주)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3)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공사포기각서 접수(2020. 00. 00.)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지구 ○○개선사업”이 연차계약별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보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인 ○○○○(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계약상대자인 ○○○○(주)과 총 4차분의 장기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총괄분 계약 준공 시점에 하자보수보증서를 관례대로 받아왔다는 이유로 연차계약별 공사 준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고, 계약상대자의 공사 포기로 2020. 12. 3. 타절 정산(1,426,212,000원) 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42,786,360원⁷⁾)을 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주)의 부도 상태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가 불투명하여 향후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장흥군의 재정을 투입하여 보수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하였다.

2. ○○○○거리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부적정

가. 업무개요

장흥군은 ○○면 ○○리 일원에 음식점 개보수 등을 위하여 [표 2] “○○○

7)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건축 등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어 타절준공금(1,426,212,000원)의 100분의 3으로 산출한 금액
② 보증기간 : 2020. 12. 3. ~ 2023. 12. 2./ 타절검사 준공일로부터 3년

○거리 조성사업 계약 명세”와 같이 2019. 11. 28. ○○○○(주)와 계약⁸⁾(193,693천원)을 체결하였다.

[표 2] ○○○○거리 조성사업 계약 명세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당초	최종	
○○○○거리조성사업	2019.00.00	2019.12. 4 ~ 2020. 4. 11	193,693	325,090	○○○○(주)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공사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지방○○사무관 ○○○○은 2020. 1.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소에서 ○○○○거리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공사이행 중 당초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추정금액 911,044,000원(추정가격 202,390,000원, 부가가치세 22,239,000원, 관급자재대 688,415,000원)
기초금액 222,62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보건소)은 현장여건을 반영한다는 사유로 당초 ‘○○○○’ 과업을 삭제하고 ‘○○○○’ 과업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과업은 당초 과업 내용에 없는 새로운 과업인데도 해당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도 없고 그에 따른 세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표 3]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사업기간 연장이 기재된 변경 시행⁹⁾공문만으로 2020. 2. 27. 설계변경하였다.

[표 3]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체결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도금액	관급자재대	사업량	사업기간
당초 (A)	882,108	193,693	688,415	- 투수블럭포장 1,103㎡ - 입구지주사인, 방향안내판, 스토리텔링안내판, 종합안내판, 텍스트조형물, ○○○○, 간판정비, 휴게쉼터조성퍼걸러 등 - 점포6개소 입면파사드, 수족관정비, 건물외벽도색	2019. 12. 4 . ~ 2020. 3. 2.
변경 (B)	961,211	325,090	636,121	- 투수블럭포장 1,103㎡ - 입구지주사인, 방향안내판, 스토리텔링안내판, 종합안내판, 텍스트조형물, ○○, 간판정비, 휴게쉼터조성퍼걸러 등 - 점포6개소 입면파사드, 수족관정비, 건물외벽도색	2019. 12. 4. ~ 2020. 4. 11.
증감 (B-A)	증 79,103	증 131,397	감 52,294		증 40일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 2. 24. 계약상대자인 ○○○○(주)으로부터 접수¹⁰⁾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 문서에는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기간을 연장 요청(40일)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당초 과업인 ‘○○○○’는 삭제하고 ‘○○○○’으로 시공하겠다는 현장여건 등의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부

9) ○○○○거리 조성사업 변경 시행(장흥군 ○○소-0000, 2020.00.007.)

10) 연장요청 접수(00. 00.) ‘○○○○거리 조성사업’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건(장흥군 ○○소-0000, 2020.00.00.)
연장사유: 열주조형물, 투수 블록, 기타관급자재 수급(계약) 지연으로 후속공정 공사정지로 인한 관급자재 제작 및 설치기간만큼의 공기연장 필요

당하게 설계변경하였다.

한편 재무과는 사업부서(보건소)의 변경계약 요구에 대하여 해당 설계변경 사항의 면밀한 검토없이 당초 계약금액(193,693천원)에서 68%가 증가된 325,090천원으로 2020. 3. 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설계변경의 대상 해당 여부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 가운데 당초 계약금액에서 과도하게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업무담당자가 상신한 ○○○○○거리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문서를 그대로 결제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68%가 증가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변경계약 추진 부적정

가. 업무개요

장흥군은 장흥토요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표 4]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명세”와 같이 2019. 6. 4. (주)○○○○개발(공동도급사 2개)과 실시설계용역¹¹⁾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도급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	용역기간	완료계 접수
계		29,167			
대표계약자	(주)○○○○개발	20,073	2019.6.4.	2019. 6. 5. ~ 2019. 7. 31.	2019. 7. 31.
공동도급	(주)○○○기술사사무소	6,177			
공동도급	(주)○○○○○	2,91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보 ○○○○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에서 용역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19. 7. 1.부터 2019.

11)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지역경제과-00000, 2019. 00. 00.)

12. 31.까지 ○○○○○과에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용역 공정계획이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기간 내에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지역경제과)은 상인회 및 상가주민 설명회(2019. 7. 11.)¹²⁾에서 나온 ○○○ 조성사업에 “신규 ○○○”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를 활용하자는 상가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럴 경우 과업내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재무과는 위 사항의 변경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12)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상인회 및 상가주민 설명회 결과보고(지역경제과-00000, 2019. 00. 00.)

도 변경계약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2019. 7. 31. 완료계를 접수¹³⁾받아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과업에 대해 2019. 8. 13.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일(2019. 7. 31.)보다 68일이 지난 2019. 10. 7.에서야 내부결재도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후 대가를 청구(2019. 10. 4.)한 후 21일이 경과된 2019. 10. 25.에서야 계약상대자에게 [표 5]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정산 명세”¹⁴⁾와 같이 23,208천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표 5]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정산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도급업체명	계약금액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계		29,167	23,208	감 5,959	
대표계약자	(주)○○○○개발	20,073	20,073	-	준공검사일 2019. 8. 13.
공동도급	(주)○○○○기술사사무소	6,177	3,135	감 3,042	대가지급일 2019. 10. 25.
공동도급	(주)○○○○	2,917	-	감 2,91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 ○○ ○○장 ○○○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변경계약 추진 부적정

가. 업무개요

장흥군은 ○○ ○○장 ○○○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2020. 5. 28. ○○○○ 사사무소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19,236천원)을 체결하였다.

지방○○주사보 ○○○○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용역 계약 담당자로, 지방○○서기 ○○○○은 2020. 7. 8.부터 2020. 10. 8. 까지 ○○○○○단에서 ○○ ○○○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13) ○○○ 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계 제출건(재무과-00000, 2019. 00. 00.)

14) 지역경제과-00000(2019. 00. 00.)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기한 내에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용역 정지나 연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스포츠산업단으로부터 ○○ ○○장 ○○○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2020. 7. 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유로 당초 과업기간에서 92일이 증가한 2020. 10. 8.까지 기간이 연장된 변경계약 요청¹⁵⁾ 공문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2020. 7. 11)보다 18일이 경과한 2020. 7. 29.에서야 소급하여 부당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20 1. 1.부터 2021. 5. 6.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담당자가 사업부서로부터 2020. 7. 8. 변경계약 요청 공문을 접수 받고도 사업부서의 계약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계약 종료일 18일이 경과한 2020. 7. 29. 에서야 소급하여 변경계약 문서를 상신하자 해당 건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15) ○○ ○○장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기간연장 계약의뢰(스포츠산업단-000, 2020. 00. 00.)

관계기관 의견 장홍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지구 ○○개선사업의 유사공법 검토 없이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채택하여 수의계약 체결[1-(2)],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1-(3)], ○○○○거리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2], ○○ ○○장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변경계약 부적정[4] 건에 대해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장홍군수는

① ○○지구 ○○개선사업, ○○○○거리 조성사업, ○○ ○○장 ○○○시설 설치사업 계약업무 추진 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② ○○지구 ○○개선사업, ○○○○거리조성사업,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장 ○○○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 추진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 ○○○,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 ○○○, 지방○○서기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장흥군 출연기관 회계사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총무과,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2009. 7. 31.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군수)를 설립하고,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 11. 2.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이사장 부군수)을 설립·운영하면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와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의 세입·세출 등 회계사무 처리의 투명성과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책임한계 확보 등을 위하여 회계관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 회계관직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총무과)은 2018. 6월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관 등 관련 규정에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임의로 ○○과 ○○○○팀장이 지출원의 회계관직을 수행하고 ○○과장이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담당자는 세입·세출 통장을 관리하는 등 [별표 1] “회계관직 지정없이 집행한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세입·세출 명세”와 같이 장학사업을 위한 이자수입 이체 등 984건 28,088,242천원의 세입과 성적우수 학생 관내고 진학지원 등 328건 27,701,617천원의 세출에 대한 회계사무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채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복지과는 2020. 10. 15.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 등 관련 규정에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도 근거없이 담당부서의 ○○○○팀장이 지출원의 회계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과장이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담당자는 세입·세출 통장을 관리하는 등 [별표 2] “회계관직 지정없이 집행된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세입·세출 명세”와 같이 농협장흥군청출장소 협력사업비 등 16건 68,937천원의 세입과 이사회 참석수당 등 10건 6,016천원의 세출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회계처리 과정의 적법성 논란과 회계처리 담당자에 대한 변상

처분 등의 조치 시 예견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관련부서에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정관에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계업무 처리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 회계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개선)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개선요구

제 목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여 [표 1] “자활기금 대여 명세”와 같이 1987년부터 2021. 4월까지 414명에게 2,749,400천원을 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자활기금 대여 명세

(단위 : 천원)

총 대여액 (원금)	회 수 액			상 환 중			미도래	체 납 액				결손처분(완료)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2,749,400 (414명)	2,621,197	2,495,246 (389명)	125,951	18,295	18,037 (1명)	258	60,000 (3명)	232,311	158,110 (18명)	5,086	69,115	33,480 (3명)	18,007	699	14,774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자활기금 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자금의 대여한도는 자활기업은 1억원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 채용기업은 5천만원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자활기업, 채용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이율은 연 1%, 연체이자율은 연 5%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자활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주민복지과)은 대여기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된 ○○읍에 거주하는 ○○○(최초 용자 대여일 19○○. ○○ ○○.) 등 18명이 [표 2]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체납 명세"와 같이 대여금 원금 및 이자 232,311,25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채권 환수방법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체납 명세

(단위 : 원)

성명	주소 (읍면동)	대여금	최초용자 대여일	만기일	최종 상환일	체납액			비고
						소계	원금	이자+연체이자	
18명		263,400,000				232,311,250	158,110,430	74,200,820	
○○○	○○읍	7,000,000	00.00.00.	00.00.00.		21,604,950	7,000,000	14,604,950	
○○○	○○읍	7,000,000	00.00.00.	00.00.00.	00.00.00.	12,280,050	4,850,000	7,430,050	
○○○	○○읍	7,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336,050	6,402,000	3,934,050	
○○○	○○읍	10,000,000	00.00.00.	00.00.00.	00.00.00.	7,007,040	138,500	6,868,540	
○○○	○○읍	10,000,000	00.00.00.	00.00.00.		19,511,900	10,000,000	9,511,900	본인 사망, 보증인 사망
○○○	○○면	10,000,000	00.00.00.	00.00.00.	00.00.00.	2,215,880	415,500	1,800,380	
○○○	○○읍	10,000,000	00.00.00.	00.00.00.	00.00.00.	8,390,490	5,063,000	3,327,490	
○○○	○○읍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211,950	7,469,930	2,742,020	
○○○	○○읍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5,650,140	3,607,500	2,042,640	
○○○	○○읍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16,506,940	11,655,000	4,851,940	

성명	주소 (읍면동)	대여금	최초융자 대여일	만기일	최종 상환일	체납액			비고
						소계	원금	이자·연체이자	
○○○	○○면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18,725,200	13,875,000	4,850,200	
○○○	○○면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20,824,890	16,095,000	4,729,890	
○○○	○○읍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20,985,790	17,760,000	3,225,790	
○○○	○○면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20,400,490	19,445,000	955,490	본인 파산 보증인 사망
○○○	○○면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9,090,390	8,325,000	765,390	균등상환액 체납
○○○	○○면	20,000,000	00.00.00.	00.00.00.		20,259,240	18,335,000	1,924,240	균등상환액 체납
○○○	○○면	2,400,000	00.00.00.	00.00.00.		1,093,560	1,014,000	79,560	균등상환액 체납
○○○	○○면	20,000,000	00.00.00.	00.00.00.	00.00.00.	7,216,300	6,660,000	556,300	균등상환액 체납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대여자 사망 및 파산, 보증인 사망으로 인하여 39,912,390원을 결손 처분해야 하는 상황 등에 이르게 하여 자활기금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3. 법령 위임에 벗어난 조례 제정 운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자활기금의 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1. 8. 8. 법제처 의견제시(의견11-0155) 사례에 따르면 조례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금에서 융자받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 어떠한 형식의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에서 융자받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체납처분을 조례로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주민복지과)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체납처분 형식과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2항에 자활기금의 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법령의 근거 없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자활기금 상환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환수 절차(고지, 독촉, 청구 등)를 이행하고(시정)
- ② 법령의 근거 없는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노인아동과,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기초연금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았거나,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거나 상계처리하고,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

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사전 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신청일 속하는 달 이후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사망, 결혼 또는 이혼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당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노인아동과)은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 ○○읍에 거주하는 ○○○에게 [표 1] “신규 기초연금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1개월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자 ○○읍에 거주하는 ○○○에게 [표 2]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자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2개월분 6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신규 기초연금 과소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소 지급	
								개월	금액
2018	○○○	○○읍	00.00.00	00.00.00	250,000	'18.11.23.	500,000	1	250,0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자 과다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성 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최 초 지급일	지급정지 사유발생일		최종 지급		과다 지급액	
					발생일	사유	지급일	금 액	개월	금액
2020	○○○	○○읍	00.00.00	00.00.00	00.00.00.	교정시설입소	00.00.00.	300,000	2	600,0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아동수당·가족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수당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제16조 및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사업안내」 제6편 수급자관리 편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IX. 보육 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수급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노인아동과)는 [표 3] “90일 이상 국외체류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면에 거주하는 ○○○ 등 2명에게 8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표 4] “90일 이상 국외체류자 아동수당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읍에 거주하는 ○○○에게 30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3] 90일 이상 국외체류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명세

(단위 : 원)

구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출국일자	90일 시점	과다 지급		
						지급기간	개월	금액
	2명							800,000
아동수당	○○○	○○면	00.00.00.	00.00.00.	00.00.00.	'20.10.	1	100,000
가정양육수당	○○○	○○읍	00.00.00.	00.00.00.	00.00.00.	'20.08.~'21.02.	7	700,0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90일 이상 국외체류자 아동수당 과소 지급 명세

(단위 : 원)

구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출국일자	90일 시점	과소 지급		
						지급기간	개월	금액
아동수당	○○○	○○읍	00.00.00.	00.00.00.	00.00.00.	'20.03.~'20.05	3	300,0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4-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제소득 미반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¹⁾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²⁾되지 않는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1)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월 30,000원)과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이장 수당³⁾(2019년까지 월 200,000원, 2020년부터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주민복지과)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산정하여 [표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면에 거주하는 ○○○ 등 4명에게 생계급여 5,96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 지급 명세

(단위 : 원)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현황				과다 지급		수급자 책정일
			구분	지급 개시	지급 최종	월 지급액	개월	금액	
4명								5,960,000	
○○○	○○면	00.00.00.	이장수당	'19.01.	'21.04.	300,000	28	4,000,000	'15.11.04.
○○○	○○읍	00.00.00.	이장수당	'13.01.	'21.04.	300,000	1	100,000	'21.03.30.
○○○	○○읍	00.00.00.	보훈명예수당	'18.10.	'21.04.	30,000	31	930,000	'11.11.02.
○○○	○○읍	00.00.00.	보훈명예수당	'18.10.	'21.04.	30,000	31	930,000	'18.08.09.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2.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3) 2020년부터는 이·통장 등 직책수당(회의수당포함)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시 20만원 범위내 공제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주민복지과)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면에 거주하는 ○○○에게 [표 6]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생계급여 과소 지급 명세”와 같이 생계급여 301,78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면에 거주하는 ○○○에게 [표 7]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생계급여 262,68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6]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생계급여 과소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가구 원수	최초 신청일	월지급액	최초 지급		과소 지급		비고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2019	○○○	○○면	3	'19.02.01.	371,000	'19.03.20.	15,030	1	301,780	'19. .2월 자활 355,970원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7]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생계급여 과다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가구 원수	최초 신청일	월지급액	최초 지급		과다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2019	○○○	○○면	1	'19.10.01.	131,340	'19.11.20.	525,360	2	262,68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3. 장제급여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000원(2020년부터 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망자 11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표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와 같이 총 8,45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급여구분	사망일	사망신고일	미지급 현황	
							금 액	사유
소계	11명						8,450,000	
2018년	○○○	○○면	00.00.00.	생계급여	'18.10.18	'18.11.08	750,000	미신청
	○○○	○○읍	00.00.00.	생계급여	'18.12.02	'18.12.13	750,000	미신청
	○○○	○○읍	00.00.00.	생계급여	'18.12.13	'18.12.19	750,000	미신청
2019년	○○○	○○면	00.00.00.	생계급여	'19.05.27	'19.05.31	750,000	미신청
	○○○	○○면	00.00.00.	생계급여	'19.09.19	'19.10.14	750,000	미신청
	○○○	○○읍	00.00.00.	생계급여	'19.10.08	'19.10.25	750,000	미신청
	○○○	○○읍	00.00.00.	생계급여	'19.10.28	'19.11.12	750,000	미신청
2020년	○○○	○○읍	00.00.00.	생계급여	'20.03.09	'20.03.12	800,000	미신청
	○○○	○○읍	00.00.00.	생계급여	'20.03.16	'20.03.27	800,000	미신청
	○○○	○○읍	00.00.00.	생계급여	'20.05.15	'20.06.03	800,000	미신청
	○○○	○○읍	00.00.00.	주거급여	'20.07.29	'20.08.20	800,000	미신청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수급자 14명에게 과소 지급된 기초연금·아동수당·생계·장제급여 9,301,780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급자 8명에게 과다 지급한 7,622,680원을 회수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해양수산물과)

내 용

1. 업무 개요

장흥군은 지역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산물○○○○○○센터 건립사업(공모사업 1개소, 60억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2018년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세부지침」 제Ⅱ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공동투자법인이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신청년도 이전 3개년 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수산물○○○○○○센터 건립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어업회사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년도 이전 3개년 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사업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해양수산물과)은 [표 1]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추

진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사업신청년도 이전 3개년 동안 판매사업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수산물○○○○○○센터 건립사업 추진 명세

(단위 : 억원)

사업신청일자 (선정일자)	사업명	보조사업 신청자	보조금 교부	사업비	법인설립일자
2018.00.00. (2018.00.00.)	수산물○○ ○○○○센터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2018.00.00.	60 (국비 24, 도비 3.6, 군비 14.4, 자담 18)	2018.00.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동일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참여기회를 잃게 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격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장흥군○○회 및 ○○○○○회 활동비 지원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스포츠산업단, 기획홍보실)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스포츠산업단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 개요

장흥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군 ○○회 및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 1] “장흥군○○회 및 ○○○○○회 활동비 보조금지원 명세”와 같이 장흥군○○회장 등 5명에게 활동비 251,90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18. 1. 1.부터 2020. 6. 30.까지 ○○○○○과 ○○○○○팀장으로, 2020. 7.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표 1] 장흥군○○회 및 ○○○○○회 활동비 보조금지원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지원액					2021년 집행잔액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251,907	32,180	67,000	77,127	75,600	51,366
장흥군 ○○회	소계	175,800	18,000	42,600	57,600	57,600	38,466
	○○회장	30,000	-	-	15,000	15,000	10,066
	○○국장	108,000	18,000	30,000	30,000	30,000	20,000
	○○차장	37,800	-	12,600	12,600	12,600	8,400
장흥군 ○○○ ○체육회	소계	76,107	14,180	24,400	19,527	18,000	12,900
	○○국장	60,980	14,180	14,400	14,400	18,000	12,900
	○○	15,127	-	10,000	5,127	-	-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II.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지원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스포츠산업단)은 2018년부터 2021. 5. 6. 장흥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장흥군○○회장 등 5명의 활동비 251,907천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또한 기획홍보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부서(스포츠산업단)에서 장흥군○○회장 등 5명에 대한 활동비 보조금 예산편성을 요청을 한 경우 조례 제·개정 사항 적절성 등의 실무검토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는데도 검토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활동비 251,907천원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 하였다.

그로 인하여 법령에 교부할 수 없는 활동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육회장 등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부당하게 지원한 활동비 집행잔액 51,366,37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지역 우수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는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과에서 2018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시설·기계장비 등 공사 및 물품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¹⁾」(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2호, 2020. 1. 2.) 제2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²⁾」(훈령 제352호, 2020. 2. 27.) 제5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1) 구 지침(공고 제2018-219호, 2019. 1. 2.) :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2억원 초과

2) 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2019. 9. 26.) :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2억원 초과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문 등록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민간전용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누리장터”라 한다)이 아닌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3. 민간자본이전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공사,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사전에 계약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공사,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진행하도록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산과, 농업기술센터)은 ○○○○협동조합 등 17개 보조사업자가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장흥군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직접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 ○○○○협동조합 등 5개 보조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 등 5개 보조사업자는 [표 1] “예정가격 임의결정 및 적격심사 없이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예정가격을 임의결정하고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 입찰 참가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협동조합이 추진한 2018년 ○○○○○ 육성사업의 경우 작업장(252㎡)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직접 육묘장과 작업장을 같이 입찰 공고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과 계약 체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작업장을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예정가격 임의결정 및 적격심사 없이 계약 체결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예정가격	적격심사 실시여부	낙찰금액	낙찰률
		7개 사업	5개소				3,328,192	
농정	나라장터	2018년 ○○○○○ 육성사업	○○○○ 협동조합	육묘장, 작업장	임의결정	부	371,292	99%
농정	나라장터	2018년 ○○ ○○ 체계 구축 사업(이월)	○○○○ 협동조합	저 온 저장고	임의결정	부	515,000	59.8%
농정	나라장터	2018년 ○○ ○○ 체계 구축 사업(이월)	○○○○ 협동조합	냉동설비	임의결정	부	438,000	71.4%
농정	나라장터	2018년 ○○○ ○○○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 협동조합	농산물 집하장	임의결정	부	295,000	69.5%
농정	나라장터	2019년 ○○○ ○○○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 협동조합	도정시설	임의결정	부	855,000	92%
농정	나라장터	2019년 ○○○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협동조합	퇴비장 지붕교체	임의결정	부	293,900	72.1%
농정	나라장터	2019~2020년 ○○ ○○○ 육성사업	○○○○ 법인신농	벼 육묘장, 창고	임의결정	부	560,000	59.4%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조합법인 등 2개 보조사업자의 경우

○○○○조합법인 등 2개 보조사업자는 [표 2] “누리장터 이용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누리장터³⁾에 공고하여 최저가 입찰 참가자와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누리장터 이용 계약 체결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낙찰금액	낙찰률
		2개 사업	2개소		711,500	
농정	누리장터	2019년 ○○분야 ○○○○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조합법인	트랙터 외 4종	209,500	96.5%
농정	누리장터	2020년 ○○○○ 육성사업	○○○○조합법인	콤바인 외 6종	502,000	85.1%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협동조합 등 8개 보조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 등 8개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와 시설공사가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표 3] “시설·장비 보조사업 수의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기계장비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3] 시설·장비 보조사업 수의계약 체결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계약금액	낙찰률
		8개 사업	8개		960,786	
농정	수의계약	2018년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협동조합	휠로더 장비구입	171,006	100%
농정	수의계약	2020년 ○○ ○○○○ 등 타작물 재배지원	○○○○조합법인	이앙기	66,500	100%
농정	수의계약	2020년 ○○○○○○○○ 지원사업	○○○	제습기,파쇄기	243,000	100%
기술	수의계약	2018년 ○○○○○○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마을 영농법인	작물 수확기 등	90,280	100%
기술	수의계약	2019년 ○○○○비 ○○ 및 부가가치향상 사업	○○○	자동랩포장기 등	50,000	100%
기술	수의계약	2020 ○○○○○○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	색채선별기 등	50,000	100%
기술	수의계약	2018년 ○○○○ ○○ 레드향 단지조성	○○○○○ 작목반	방제시설 등	217,200	100%
기술	수의계약	2018년 ○○○○ ○○ 레드향 단지조성	○○○	시설하우스	72,800	1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조달업무 모든 과정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민간수요자용 조달시스템

4) ○○○ 등 2명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 등 2명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하우스 신축공사를 [표 4] “시설하우스 자가 시공 명세”와 같이 전문업체에 시공을 의뢰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재 구입 및 설치 인부를 섭외하여 자가 시공을 하여 시설하우스 기준 규격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표 4] 시설하우스 자가 시공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시공금액
		2개 사업	2개소		154,196
농정	자가시공	2018년 ○○○○○○ 생산기반구축	○○○	시설하우스 신축	54,196
농정	자가시공	2020년 ○○○○ ○○ 아열대과수 육성	○○○	시설하우스 신축	100,00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동종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우려와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 시공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3.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 미개설 및 이자 정산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이하 “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사업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사업자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면 보조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사업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과 이자를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산과)은 [표 5] “보조사업 전용계좌 미개설 및 이자 정산 미실시 명세“와 같이 ○○○○협동조합 등 4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송금하여 집행하도록 하였고, ○○○○협동조합 등 6개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이자 발생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자 발생액을 반납받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정산을 처리하였다.

[표 5] 보조사업 전용계좌 미개설 및 이자 정산 미실시 명세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전용 계좌여부	이자 정산여부
		합계	보조	자담		
7개 사업	6개소	4,671,515	3,219,346	1,452,169		
2018년 ○○○○○ 육성사업	○○○○ 협동조합	400,318	360,000	40,318	부	부
2018년 ○○ ○○ 체계 구축 사업(이월)	○○○○ 협동조합	1,200,383	693,000	507,383	부	부
2018년 ○○○○○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 협동조합	502,704	300,000	202,704	부	부
2019년 ○○○○○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 협동조합	958,360	500,000	458,360	부	부
2019년 ○○○○○마을 육성사업	○○○○	498,907	449,016	49,891	여	부
2019년 ○○○○○ ○○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조합법인	328,000	295,200	32,800	여	부
2019년 ○○○○○ 육성사업	영농조합 법인 ○○	782,843	622,130	160,713	부	부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민간보조사업으로 발생 된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이 예상 되면 사전 공제하고 집행하거나 또는 환급금에 대해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은 보조사업자인 ○○○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을 예상하여 사전 공제를 하거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도록 안내를 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인 ○○○가 정산 이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표 6] “민간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3,613천원을 받았는데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 민간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명세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총사업비	총환급금액	회수액
2019년 ○○○ ○○○○○ 시설장비개선지원	○○○	가공기자재 등	50,000	3,613	3,613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5. 농업 시설물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제7조 제2항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산과)은 ○○○○ 등 3개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비 정산서에 [표 7] “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 명세”와 같이 증빙서류에 전자세금계산서⁵⁾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24,856천원을 집행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 7. 1. 이후)

[표 7] 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 명세

(단위 : 천원)

사업명(보조사업자)	시공업체	집행품목	사업비	증빙서류
합 계			24,856	
2018 ○○○○○ 육성사업(○○○○○)	(주)○○○○○	안전화 등	11,231	일반 세금계산서 제출
2018년 ○○ ○○ 체계 구축 사업(○○○○○)	○○○○건설	안전화 등	9,081	일반 세금계산서 제출
2019년 ○○○○○ 육성사업(영농법인○○)	(주)○○○○○	안전화 등	4,544	일반 세금계산서 제출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정산 증빙서류 검토 소홀로 24,856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2018년 ○○○○○ 육성사업 계약 및 시공업체 선정 등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사전 공제를 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613,000원과 부적정하게 집행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56,000원 등 총 28,46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요구·통보

제 목 농촌 ○○○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지역경제과)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생약초 산업을 지역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고 6차 산업까지 연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표 1] “농촌 ○○○ ○○○사업 예산 편성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301백만원¹⁾을 투입하여 생약초 테라피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생약초 생산·연구·상품화·관광산업화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표 1] 농촌 ○○○ ○○○사업 예산 편성 명세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편성목	시행기관	연도별 예산 편성액					비고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개소	7,301	700	2,167	2,202	2,232	
장흥 ○○○ ○○○ 사업	민간위탁금	○○○○○○○ 추진단	4,093	550	2,025	620	898	산업육성
사업단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단	308	-	72	102	134	인건비
장흥 ○○○ ○○○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공사○○지사	2,900	150	70	1,480	1,200	기반조성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8. 1. 2.부터 2018. 12. 31.까지 및 2020. 1. 1.부터

1) 국비 4,895백만원, 군비 2,406백만원/위수탁 업무 협약을 통해 생약초 생산·연구·상품화·관광산업화 등을 농촌 ○○○ ○○○ 추진단(4,401백만원), ○○○○○공사 ○○지사에 ○○○ ○○○ 생활 문화센터 조성(2,900백만원)사업을 지원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농촌 ○○○ ○○○사업 업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농촌 ○○○ ○○○ 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시가지·도로청소 대행사업비 등에 편성하나,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촌 ○○○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의뢰²⁾’ 교부조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2호, 2020.1.2.) 제21조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 2020.2.27.) 제5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2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2)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000(2018.00.00.), 농업정책과-0000(2019.00.00.), 농업정책과-0000(2020.00.00.), 농업정책과-0000(2021.00.00.)

한편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제처 의견제시³⁾ 사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 시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더라도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또는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⁴⁾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농촌 ○○○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지역경제과)은 농촌 ○○○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데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장흥군 ○○○ ○○○ 센터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농촌 ○○○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농촌 ○○○ ○○○사업 관련 컨설팅 등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근거로 장흥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2019. 6. 18. 부당하게 추진단에 민간위탁하였으며, 추진단으로 민간위탁금을 교부하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집행 관련 계약 절차를 교부조건에 부여하지 않았다.

3) 안전번호 의견 14-0045(2014. 2. 27.) 민간위탁 시 개별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동의 규정이 없으나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번호 의견 15-0052(2015. 3. 13.)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4) “~에 관한 업무는 ○○○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

그로 인하여 추진단에서 555백만원의 생약초 연구용역을 ○○대학교 ○○협력단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추진단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흥군 ○○○ ○○○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추진단은 행정지원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 ○○○ ○○○사업 추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추진단에서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하는지 여부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지역경제과)은 추진단장이 추진단 직원 채용에 있어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개모집도 하지 않은 채 2019. 1. 1.자로 직원 2명을 임의로 채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추진단에서 회계담당자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지급받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보조금 3,195,000천원⁵⁾ 중 용역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722,738천원을 집행하고 2021. 5. 6. 감사일 현재 2,472,262천원을 보관하고 있는 등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추진단장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결과를 초래하였고, 회계담당자가 재정보증보험에 미가입한채 회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장흥군은 농촌 ○○○ ○○○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시군 예산 자율 편성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도 편성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수의계약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 ○○○사업 지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장흥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장흥군은 추진단의 직원 채용에 있어 추진단은 민간조직이고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인사채용 방식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타 사례(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문화원 등)를 보더라도 인력 채용 현황만 보고받고 채용 방식, 절차, 심사방법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단은 장흥군과 업무 공동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약 44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로서 장흥군은 추진단의 직원 채용

5) 농촌 ○○○ ○○○사업 보조사업 전용계좌에 2019. 6. 27. 2,575,000천원, 2020. 3. 3. 620,000천원을 지급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민간조직이란 사유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보조사업 예산편성, 민간위탁 절차, 보조금 교부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고 추진단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추진단 회계담당자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사업비 집행에 있어 계약 등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건설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읍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8. 6월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4]¹⁾에 따라 위임국도와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점용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38건을 추진하였다.

지방○○주사보 ○○○은 2016. 1. 1.부터 2020. 6. 30.까지 건설도시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등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발행 「2015 도로법 해설」에 따르면 도로점용은 점용물이

1) 시·군 권한위임 사항: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통로 등 연결허가(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에 한한다.)

도로구역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예 : 전주, 표지판, 관로매설 등) 적용되고, 도로점용(연결) 허가는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예 :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진입로 등)에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4]에 따르면 지방도 도로점용허가만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임국도에 대한 연결허가는 전라남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도로변에 건물 신축 시 “진입로”를 설치하여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임국도에 대한 연결허가는 권한이 없으므로 전라남도에서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건설도시과)은 [별표] “도로점용(연결)허가 추진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연찬을 소홀히 하여 21건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단순 점용허가 하여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물²⁾에 대해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 후에 준공³⁾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장흥군은 도로점용(연결) 허가권이 없는 위임국도⁴⁾에 대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 7건⁵⁾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점용허가 시 점용공사 최소기간을 지정하지 않아 공사 장기화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기존 도로와 진·출입로 연결에 따른 교통안전과 차량소통 지장 유무를 의견도 조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규정에 맞지 않은 시설물들이 지방도와 연결됨으로써 지방도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방도 통행 차량과 진·출입 차량사이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교통안전에 저해를 가져왔다.

2) 변속차로, 배수시설 등

3)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4) 위임국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권자는 “전라남도지사”

5) 허가담당자 : 지방○○주사보 ○○○ 4건 허가처리, 지방○○서기보 ○○○ 3건 허가처리

3.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 허가조건 명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 시 향후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은 허가조건에 명시된 경우 이를 따르도록⁶⁾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실무 업무매뉴얼에 [표 1] “도로점용 허가조건 표준(안)”을 제시하며 도로점용 허가담당자에게 교육 및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도로점용 허가조건 표준(안)

허가조건 표준(안)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필요한 경우,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허가취소, 효력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상기조건에 의의가 있을 시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토록 하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흥군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향후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건설도시과)은 [표 2] “도로점용(굴착)허가 추진 명세”와 같이 2019. 12. 16.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이 점용허가 신청한 3건⁷⁾(한전주 778본)에 대하여 점용물 이설비 부담주체를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다.

6) 국토부 질의회신 도관 58710-436(1998. 7. 7.)

7) 허가담당자 : 지방○○주사보 ○○○

[표 2] 도로점용(굴착)허가 추진 명세

연번	대 상 지			허가신청자	허가일	허가목적	비고
	면	리	지번				
1	○○면 ○○면	일원	-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	2019. 00. 00.	한전주/ 292개소	1. 점용물 이설비 부담주체 미명시 2. 공사기간 미명시
2	○○읍 ○○면 ○○면	일원	-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	2019. 00. 00.	한전주/ 353개소	1. 점용물 이설비 부담주체 미명시 2. 공사기간 미명시
3	○○면 ○○면	일원	-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	2019. 00. 00.	한전주/ 133개소	1. 점용물 이설비 부담주체 미명시 2. 공사기간 미명시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향후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 시 한전주 이설비용 부담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임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였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연찬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도로점용 허가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민원봉사과)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건축법」 제11조부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621건의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를 처리하였다.

지방○○주사 ○○○은 2019. 2. 8.부터 2020. 12. 30.까지 ○○○○과에서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공장 건축허가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받은 공장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표 1]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 명세”와 같이 장흥군 ○○○○에서 ○○면 ○○리 산00-0번지에 신청한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공장설립 승인 부서와 협의 및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20. 5. 11. 건축허가를 하였다.

[표 1]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 명세

(단위 : m²)

구분	위치	건축주	대지면적	건축면적	생산물	건축 허가일	공장설립 승인일	비고
신축	○○면 ○○리 산00-0	장흥군 ○○○○	13,141	1,944.17	톱밥	2020. 5. 11.	2020. 5. 2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 건축물의 거실 벽 및 반자¹⁾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1) 방 또는 마루의 천장을 가려서 만든 구조체로, 미관의 목적 외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배관을 감추고 소리·열·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여 실내 환경을 좋게하기 위해 만드는 구조체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실내 마감재료표 등을 확인하여 「건축법」 제52조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읍 ○○리 000-0번지(건축주-○○○, 용도-노유자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표 2] “실내 마감재료표 미제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처리 명세”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실내 마감재료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총 2건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 없이 용도변경을 허가 처리하였다.

[표 2] 실내 마감재료표 미제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처리 명세

연번	건축주	위 치	용도변경 신 청 일	용도변경 허 가 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바닥면적 (㎡)	설계업체	실내 마감재료표 제출여부
					변경전	변경후			
1	○○	○○읍 ○○리 000-0	2019. 2. 8.	2019. 8. 12.	청소년 게임 제공업	노유자 시 설	147.85	○○건축사 사무소	부
2	○○○	○○읍 ○○리 000-0	2019. 8. 1.	2019. 8. 20.	제2종근린 생활시설	노유자 시 설	237.58	○○건축사 사무소	부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장흥군 주차장 조례」 제16조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된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21. 5. 6. 감사일 현재 ○○읍 일원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표 4]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명세”와 같이 물건 적치 등으로 3개소 5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도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4]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명세

연번	위 치	용 도	연면적 (㎡)	주차면	위반현황		비고
					위반내용	주차면	
계	3개소			11		5	
1	○○읍 ○○리 000-0	제1종근린 생활시설	360.87	1	물건 적치	1	
2	○○읍 ○○리 000-0	공 장	2,553.43	8	물건 적치	2	
3	○○읍 ○○리 000-0	공 장	629	2	물건 적치	2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홍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홍군수는

- ① 공장 건축허가 및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물건 적치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부설주차장은 원상회복되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옥외광고물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건설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8. 11. 19. ○○읍 ○○리 000-0번지 ○○카센터의 벽면이용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 허가를 하는 등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30개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는 2018. 10.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옥외광고물 허가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사 광고물’¹⁾ 등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²⁾ 등에 자사광고 외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하려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카센터 광고물이 설치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이고 광고물 설치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그림 1] “광고물 원색 도안 이미지”와 같이 ○○-○○○○윤활유(주)는 ○○카센터와는 전혀 다른 회사이다.

[그림 1] ○○-○○○○윤활유(주)사 광고물 원색 도안 이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장흥군은 ○○카센터가 자사광고물이 아닌 ○○-○○○○윤활유(주)를 광고하는 옥외광고물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건설도시과)은 2018. 8. 8. ○○카센터의 광고대행업자인 ○○○디자인이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로 제출한 타사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원색 도안 이미지를 검토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기간 : 2018. 11. 19. ~ 2021. 11. 18.)을 교부하여 [그림 2] “○○카센터 현장 사진”과 같이 타사광고를 포함하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국토계획법」에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으로 구분

[그림 2] ○○카센터 현장 사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게 타사 광고 내용이 반영된 옥외광고물이 녹지지역에 설치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서와 안전점검 신청서 및 광고물 등의 원색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의 3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아니되며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건설도시과)은 2020. 6. 19. ○○읍 ○○리 000-0번지 자연녹지지역 내 ○○카센터 벽면이용 간판에 [그림 3] “○○카센터 현장 사진”과 같이 ○○카센터와 관련이 없는 ○ ○○○ 제품을 광고하는 타사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주이용 간판 표시기간 연장(기간 : 2020. 6. 19. ~ 2023. 6. 18.)을 허가하였다.

[그림 3] ○○카센터 현장 사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연장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건설도시과)은 ○○읍 ○○○○로 ○○의 ○○카페 지주이용

간판이 2021. 1. 28.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표] “장흥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미허가 명세”와 같이 10건의 옥외광고물이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시정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장흥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미허가 명세

연번	업소명	표시장소	광고물종류	허가신고일	표시시작일	표시종료일
계	10건					
1	○○카페	○○읍 ○○○로 00	지주이용간판	2018. 1. 29.	2018. 1. 29.	2021. 1. 28.
2	○○○ 당구장	○○읍 ○○로 00-0	돌출간판	2018. 3. 19.	2018. 3. 19.	2021. 3. 18
3	○○○텔	○○읍 ○○리 000	지주이용간판	2018. 2. 26.	2018. 2. 26.	2021. 2. 25.
4	○○○ 노래홀	○○읍 ○○로 00	돌출간판	2016. 12. 13.	2016. 12. 13.	2019. 12. 12.
5	○○○ 장어	○○읍 ○○1길 00	돌출간판	2017. 7. 3.	2017. 7. 3.	2020. 7. 2.
6	비즈니스 ○○○○	○○읍 ○○3길 00	돌출간판	2017. 9. 4.	2017. 9. 4.	2020. 9. 3.
7	○○관	○○읍 ○○○1길 0	돌출간판	2016. 8. 22.	2016. 8. 22.	2019. 8. 21.
8	문화공방 ○○○○	○○읍 ○○○로 00	지주이용간판	2017. 4. 3.	2017. 4. 3.	2020. 4. 3.
9	○○리버	○○읍 ○○3길 0	돌출간판	2017. 8. 21.	2017. 8. 21.	2020. 8. 20.
10	○○랜드	○○읍 ○○로 00	돌출간판	2017. 8. 28.	2017. 8. 28.	2020. 8. 2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은 철거 등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민원봉사과)

훈 계 대 상 자 ① 장흥군 ○○○○과 지방○○서기 ○○○

② 장흥군 ○○사업소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2018. 6.부터 2021. 4.까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1,126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다.

지방○○서기 ○○○은 2018. 10. 1.부터 2020. 12. 30.까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로, 지방○○사무관 ○○○은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19. 4월부터 2021. 1월까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명세”와 같이 총 11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이 지역개발공채 12,150천원을 매입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19. 4. 12. ○○면 ○○리 000-0번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 한 개발행위 허가기간(2020. 3. 31.)이 388일이 지난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의견청취,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43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693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민원봉사과)은 2018. 11. 20. ○○읍 ○○리 000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 1,524천원에 대한 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2019. 12. 30.에 만료되어 2021. 5. 6. 감사일 현재 486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표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4건의 이행보증증권 68,006천원이 보증기한을 경과하였는데도 이를 연장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하는 조례의 기본 취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①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 지방○○

서기 ○○○과 당시 담당팀장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가능한 4건 3,215천원은 매입하도록 조치하며, 허가기간 경과된 43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하고, 보증기한 경과된 4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재예치하거나 보증기한이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공공건축사업 용역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21년 2월과 3월에 2021년 ○○시장(○○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옛)○○○○○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1. 1.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 ○과에서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21. 1. 1.부터 2021. 5.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옛)○○○ ○○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 미만	필수	×	선택	선택
5천만원 ~ 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외의 설계를 발주하더라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건축기획 업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은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필수 또는 의무적인 사전 행정절차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명세

(단위 : 천원)

용역명	발주부서	추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 업무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시장(○○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99,000 (87,355)	2021. 2. 17.	부	대상 아님	부 (과업에 포함)	대상 아님
(옛)○○○○○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186,986 (164,515)	2021. 3. 26.	여	여	여	부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옛)○○○○○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으로 발주하더라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상당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무과는 사업부서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용역 발주 의뢰한 담당 공무원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재무과)

훈 계 대 상 자 장흥군 ○○읍 지방○○주사 ○○○
(前 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 추진 명세”와 같이 약 560억원을 투입하여 19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표 1]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 추진 명세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건 수	192	39	101	52
	사업비	56,099	10,177	28,792	17,130
재난안전과	건 수	20	3	11	6
	사업비	6,569	783	3,900	1,886
문화관광과	건 수	15	3	8	4
	사업비	6,455	1,773	3,084	1,598
지역경제과	건 수	12	3	7	2
	사업비	3,775	571	2,969	235
해양수산과	건 수	15	3	11	1
	사업비	7,343	467	4,161	2,715
환경관리과	건 수	11	1	7	3
	사업비	2,221	146	1,625	450
산림휴양과	건 수	63	14	29	20
	사업비	12,396	2,982	5,608	3,806
건설도시과	건 수	56	12	28	16
	사업비	17,340	3,455	7,445	6,440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²⁾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시행되고 있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흥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재무과)은 재난안전과 등 7개 부서에서 발주한 47개 사업장에서 [별표 1]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윙카, PE드럼, PE웁스 교통안전 시설물 및 공사안내 간판 등’으로 집행하였는데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81,252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림휴양과 등 2개 부서에서 발주한 4개 사업장에서 [별표 2] “안전관리비 수기 간이세금계산서 제출 명세”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청구 시 [사진] “수기 간이세금계산서”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9,842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사진] 수기 간이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간이세금계산서 제출 (○○ ○○지구 발기반 정비사업(1차분))	간이세금계산서 제출 (○○ ○○ 농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재난안전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주한 4개 사업장에서 [별표 3] “안전관리비 사진 재사용 명세”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청구 시 [그림] “안전관리비 구매 증빙사진”과 같이 사진을 재사용하여 제출하였으나 확인 및 정산

2)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 7. 1. 이후)

등을 소홀히 하여 7,403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다.

[그림] 안전관리비 구매 증빙사진



그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표 2]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부담집행 명세”와 같이 전체 안전관리비 356,895천원의 약 27%에 달하는 98,497천원을 부담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부담집행 명세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서	공사 건수	안전관리비 지급액	부담집행금액	유형별 지적내용		
			환수액 (①+②+③)	①사용불가 항 목	②간 이 계 산 서	③사 진 재 사 용
합 계	54	356,895	54/98,497	47/81,252	3/9,842	4/7,403
재 난 안 전 과	6	38,266	6/12,537	5/11,484		1/1,053
문 화 관 광 과	3	28,563	3/ 5,786	2/ 5,577		1/ 209
지 역 경 제 과	7	51,489	7/ 9,822	7/ 9,822		
해 양 수 산 과	2	12,982	2/ 3,474	2/ 3,474		
환 경 관 리 과	3	14,415	3/ 4,982	3/ 4,982		
산 림 휴 양 과	16	86,972	16/29,397	13/21,338	1/1,918	2/6,141
건 설 도 시 과	17	124,208	17/32,499	15/24,575	2/7,924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이행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사진 재사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98,497,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법」에 따라 [표 1] “일반수도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일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일반수도사업 추진 명세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계	2건	72.32	9,243	5,677	3,566		
1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38.42	5,084	3,178	1,906	2016. 2. 29. ~2019. 11. 28.	(주)○○○○
2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33.90	4,159	2,499	1,660	2017. 3. 30. ~2020. 4. 10.	○○○○(주)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장흥군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법」에 따라 [표 2]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

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계	2건	16.4	9,858	7,078	2,780		
1	○○ 하수관거 정비사업	11.3	6,538	4,982	1,556	'20. 7. 3. ~ '22. 6. 22.	(주)○○○○
2	○○ ○○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1	3,320	2,096	1,224	'20. 6. 19. ~ '21. 12. 31.	(주)○○○○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일반수도 설치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변경 승인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환경부)」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¹⁾의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에 대해 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일반수도 사업 설치 계획 변경 시는 국고보조금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수도사업소)은 2021. 5. 6. 감사일 현재 [표 3] “○○지구 ○○

1)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0000(2014. 00. 00.) 「2014년 상수도예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지방 상수도 개설사업 변경계약 명세”와 같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후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3] ○○지구 ○○○ 지방 상수도 개설사업 변경계약 명세

(단위 : 천원, %)

도급 변경	변경계약액	증 감 액	증감율	계약체결일	변경사유
최초 계약	2,468,936			2016. 2. 24.	
변경 (1회)	2,575,190	증 106,254	4.3	2016. 12. 14.	- 유량계실 위치변경으로 관로 추가 등
변경 (2회)	2,582,630	증 7,440	0.3	2018. 3. 13.	-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관로 조정 - 아스콘 포장면적 조정 - 타부서와 병목구간 공정계획 변경 등
변경 (3회)	3,079,700	증 497,070	19.2	2019. 2. 1.	- 물부족 지역(○○, ○○, ○○, ○○)추가 (411,128천원) - 물가변동 금액 반영(85,942천원)
변경 (4회)	3,178,526	증 98,826	3.2	2019. 10. 25.	- 물부족 지역(○○, ○○)추가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일반수도 설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공사가 아닐 경우

에는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수도사업소)는 2021. 5. 6. 감사일 현재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5개 마을(○○, ○○, ○○, ○○, ○○)에 대하여 주민들의 상수도 추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영하고자 사업을 변경하면서 상수관로 4.65km과 급수관로 2.97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989,682천원을 추가 집행하였으며 위 공사의 추가 공사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표 4] “○○지구 ○○○ 지방 상수도 개설사업 추가 시행 명세”와 같이 2회에 거쳐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4]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추가 시행 명세

(단위 : 천원)

마을 명		합 계	○○, ○○, ○○, ○○	○○, ○○	비 고
합 계		989,682	836,656	153,026	
금액	도 급 액	509,954	411,128	98,826	
	관급자재	479,728	425,528	54,200	
설계 변경 내용	배수관로(m)	4,649	3,589	1,060	
	급수관로(m)	2,971	2,881	90	
	가압장(개소)	1	1	-	
변경계약일		2회	2019. 2. 1.	2019. 10. 25.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한 5개 마을의 관로 및 가압장 공사는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시공 중인 회사인 (주)○○○○과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종업체의 입찰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일반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시공방법의 변경,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수도사업소)은 2021. 5. 6. 감사일 현재 일반 수도사업의 설계

에 반영된 공종을 시공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다 지급한 현장과 추진 중인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감액이 필요한 현장이 다음과 같이 발생 하였다.

①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관 보호공 L=330m, 유량계실 1개소 강관 동바리, 강관비계, EGI웬스 (H=2.4m) 160m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29,816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② ○○지구 ○○○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굴착 시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는 절토고 2m 이상인 곳에 반영하여야 하나 2m 이하인 구간 161m에 반영되어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23,36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③ ○○ ○○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시 하수관거 설치로 담장 블록 헐기 및 복구가 예상되어 블록 쌓기, 미장 외벽 등 공종을 반영하였으나, 관로 노선 변경 등으로 해당 공종이 불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12,587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④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굴착 시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는 절토고 2.0m 이상인 곳에 반영하여야 하나 2.0m 이하인 구간에 123m가 반영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18,697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한 53,176,000원을 회수하고, 과다 설계된 31,284,000원을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